

강 남 구 의 회
제312회 제1차정례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4. 6.

강 남 구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73 374
----------	------------

2024년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5월 30일 강남구청장, 의안번호 373호)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 5월 30일 강남구청장, 의안번호 374호)

나. 회의경과: 제319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차 회의: 2024. 6. 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장 선임: 박다미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이성수 의원
- 제4차 회의: 2024. 6. 20.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총괄 제안설명 【부구청장】
 - 국·과별 사업설명 및 질의답변
【행정국, 미래전략기획단, 기획경제국, 복지생활국, 미래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 제1차 계수조정
- 제5차 회의: 2024. 6. 21.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제2차 계수조정 및 국·과별 보충질의, 답변
 - 수정가결 【수정안 발의】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부구청장 정현재)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총 1204억 원으로, 일반회계 1,083억 원, 특별회계 121억 원임

- 일반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958억 원, 보조금 사용 잔액 12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3억 원, 국시비 보조금 감액분 3억 원을 포함한 총 1,083억 원임
- 특별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20억 원, 보조금 사용 잔액 3,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9,3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2,200만 원을 포함한 총 121억 원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하수 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 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강남을 위해 130억 원을 편성
-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강남구 2청사 조성, 탄천 파크골프장 이용 편의를 위한 교량 설치, 강남 힐링숲 조성 및 청담가로공원 환경개선 등 구민 생활에 여유와 편의를 더하는 문화행정 분야에 95억 원 편성
-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지원 확대, 개포4동 ICT 특정개발지능지구 지정 추진, 도심항공 교통기반 산업정책 연구용역 등 지역경제 및 미래산업 분야 105억 원 편성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경로당 중식 지원,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및 출산양육지원, 국가 예방접종, 난임부부 수술비 및 마음투자 지원 등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 및 복지분야에 149억 원 편성
-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 등에 123억원,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감편성 104억 원, 보조금 반환금액 226억 원, 순세계잉여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금 359억원 편성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 치매안심센터 주차장 보수 등 공영주차장 관리에 6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금 112억 원 등 총 121억원을 편성함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청사기금 등 5개 기금이며 651억원을 증액하여 총 규모는 5,548억 원임
- 2청사 사업 추진을 위해 청사기금에 임대보증금 350억 원을 편성하고, 고향사랑기금에 2023년 기부금 수익 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70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융자지원금 100억 원,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예치금 25억 원을 추가 반영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미영)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검토의견】

1. 세입분야

가. 예산안 총규모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총 9.28% 증가한 1조 4,181억 7,362만 3천원임.
- 본예산, 간주처리 금액이 포함된 기정예산은 1조 2,977억 5,513만 7천원이고 금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1,204억 1,848만 6천원임.
- 기정액 대비 9.28% 증가(일반회계 대비 8.69% 증가)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제1회 추경	증감률(%)
계	1,418,173,623	1,297,755,137	120,418,486	9.28
일반회계	1,354,360,494	1,246,069,445	108,291,049	8.69
특별회계	63,813,129	51,685,692	12,127,437	23.46

나. 추경재원

- 추경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3억 12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 1,077억 9,965만 8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 6,786만 3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125억 5,109만 4천원임.

(단위:천원)

구 분	계	국시비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예탁금 이자수입	보조금 사용잔액
계	120,418,486	△300,129	107,799,658	367,863	12,551,094
일반회계	108,291,049	△322,129	95,821,658	274,540	12,516,980
특별회계	12,127,437	22,000	11,978,000	93,323	34,114

☞ 2023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 총 210,233백만원
 (예산편성액 210,233백만원 : 본예산114,412백만원 + 1차추경 95,821백만원)

2. 세출분야

가. 추경규모 : 120,418백만원

(단위:천원)

구 분	총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120,418,486	108,291,049	12,127,437
신 규 사 업	42,725,435(19개 사업)	42,725,435(19개 사업)	-
증 액 사 업	65,348,136(112개 사업)	53,428,302(101개 사업)	11,919,834(11개 사업)
감 액 사 업	△10,433,209(44개 사업)	△10,433,209(44개 사업)	-
보 조 금 반 환	22,778,124(61개 사업)	22,570,521(55개 사업)	207,603(6개 사업)

나. 주요 편성 방향

○ 재해·재난 대비 등 안전강화 사업: 8,073백만원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추경편성액	비고
1	중대재해 예 방 실	중대시민재해 예방 [공중이용시설 및 시민재해 발생 우려 시설 외부 전문기관 합동점검비]	53,937	
2	문화도시과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 [복합건물(주차,기념관,도서관) 설계공모에 따른 기뵐실시 설계비]	897,620	
3	교통행정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합동점검 결과 적출사항 정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시설물 설치 등]	1,400,000	
4	교통행정과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교통카드 지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보상 확대, 1인당 20만원]	63,260	신규
5	교통행정과	공영(노상,노외)주차장 관리운영 [치매안심센터 공영주차장 보수, 논현1.2호 소송비용 등]	610,397	주차장 특별회계
6	교통행정과	도산공원 복합시설 지하주차장 건설 설계 용역 [기본계획 변경용역 결과 증가된 공사비에 따른 설계 용역비 증가분]	34,742	주차장 특별회계

연번	부서명	사업명	추경편성액	비고
7	도로관리과	제설대책 [작년도 강설량 증가에 따른 제설대비]	1,155,630	
8	도로관리과	도산대로 1길 주변 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 [민선8기 공약사업 ‘이면도로 포장여부 전수조사 및 단계별 포장 추진’에 따라 노후 불량 이면도로 정비 (2022년~2026년까지 연차별 시행)]	911,934	신규
9	도로관리과	언주로 837~803 주변 보도정비 공사 [간선보도 및 경계석 · 측구 정비]	450,000	신규
10	치수과	하수시설물 보수 [노후 하수시설물 긴급 보수 및 정비] * 2024년 예산 2,200백만원 중 1,513백만원 지출(공정률 68%) * 區 관리 대상 원형관로 총 611km, 이중 정비 대상 노후 관로 351km 매년 평균 11Km정비 추진 중(전 구간 정비시 32년 소요)	1,200,000	
11	치수과	언주로 103길 27주변의 6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노후 하수관로 공사] * 노후,배수불량 등 민원 다수 발생구간이며 안전사고 및 침수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긴급 보수 필요	1,090,000	신규
12	치수과	하수도 준설 [침수취약지역의 하수시설물 퇴적토 제거] * 2024년 예산 23억 120km 준설 가능, 취약지역 선제조치 및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대응이 어려워 추경 필요	1,013,040	
13	치수과	빗물받이관리 특별 전담반 확대 시행 운영 [치수과 연간단가 15명→40명(동주민센터 선정주민 30명 추가)] - 2023년 : 강남역, 대치역사거리, 선정릉,논현초교, 성수대교남단 주변 - 2024년 : 23년 시행구간+영동시장,역삼초교 등 9개소 추가	90,002	신규

○ 생활환경 · 건강증진 사업: 6,164백만원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추경편성액	비고
1	총무과	강남구 2청사 조성 [강남구 2청사 임차료 및 인테리어 공사비, 사무용품 구매비]	2,118,981	신규
2	주민자치과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용역) [도곡로327(역삼2동) 공영노외주차장 부지 타당성 조사 용역]	47,000	

연번	부서명	사업명	추경편성액	비고
3	생활체육과	탄천 파크골프장 조성 [세곡천 보행용 교량 및 쉼터(교육장)용 데크, 창고 설치비]	457,626	
4	생활체육과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 [세곡체육, 역삼문화, 청담근린공원 등 4개소 유휴공간 야외탁구대 설치]	21,800	
5	공원녹지과	강남 힐링 숲 조성 [개포동638-5(구룡터널사거리 인근), 실시설계 결과 추가공종(BF인증을 위한 토목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등) 발생]	1,500,000	
6	공원녹지과	도곡공원 정상부 커뮤니티 힐링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에 따른 공사비 확보]	800,000	
7	공원녹지과	청담가로공원(쉼터) 노후환경 개선 [노후시설물 정비, 화장실 등 편의시설 보강]	543,296	신규
8	공원녹지과	수서역 6번출구 만남의 광장 조성 [폐기물처리비 및 수목식재비]	100,000	신규
9	건강관리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인당 8회]	520,000 국 260,000 시 130,000 구 130,000	신규
10	건강관리과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사업 [정신질환자 행정+응급입원 가능한 민간의료기관 1개소 지정 운영비]	55,200 기 27,600 구 27,600	신규

○ 지역경제, 일자리 활성화 사업: 10,467백만원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추경편성액	비고
1	주민자치과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2023년 연말 고향사랑기부 급증(157,547천원)으로 답례품지급비 예산(10,600천원) 전액 소진]	51,000	
2	지역경제과	2024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도시제조업체(의료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중 공모 선정된 업체 대상 최대 550만원 지원]	12,100	신규
3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전출금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확대]	10,000,000	

연번	부서명	사업명	추경편성액	비고
4	일자리정책과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이동노동자 밀집지역 내 쉼터 추가 조성, 3.12. 공모선정]	68,000 시 34,000 구 34,000	
5	일자리정책과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CES2025(라스베거스, 2025.1.7.~1.10.) 참가]	153,593	
6	도시계획과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용역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른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용역]	22,000	신규
7	혁신전략과	개포4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에 따른 용역비]	140,000	
8	혁신전략과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산업 정책연구 용역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따른 강남구 도입 필요성 검토]	20,000	신규

○ 동행복지 사업: 2,800백만원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추경편성액	비고
1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전층 리모델링 추가공사(내진보강), 농인 및 태화기독교복지관 노후 차량교체]	1,339,103 시 924,367 구 414,736	
2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운영 [165개 경로당 물품(식기세척기) 추가 지원]	642,800	
3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니어센터 운영 [은곡시니어센터 위탁운영비, 공사감리비]	112,737	
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관 6개소(구립2, 법인4) 운영비, 인건비 지원] ※ 구립: 강남세움복지관, 강남장애인복지관 ※ 법인: 성모자애복지관, 청음복지관, 충현복지관, 하상장애인복지관	705,867 국 27,419 시 △111,140 구 789,588	

○ 문화증진 사업: 2,000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추경편성액	비고
----	-----	-----	-------	----

연번	부서명	사업명	추경편성액	비고
1	문화도시과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 [복합건물(주차,기념관,도서관) 설계공모에 따른 기본/실시 설계비]	897,620	
2	문화도시과	빛과 소리 축제 [10.2~13. 한강 잠원지구 다목적운동장, 지역문화단체 협업 공연]	280,000 시 200,000 구 80,000	신규
3	문화도시과	강남구 개청50주년 <강남의 시간을 걷다> 발간 [시대별 역사, 인물 관련 스토리텔링 및 자료 수록 책자(1,000부)]	95,000	신규
4	문화도시과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전주이씨 광평대군과 묘역 주변 정비) [2023년 수해로 훼손된 배수로 및 석축 정비, 주변 수목 정리]	340,000 시 238,000 구 102,000	신규
5	문화도시과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봉은사 시왕도 보존처리) [시왕도 보존처리(표구), 영인본 제작]	85,000 시 59,500 구 25,500	신규
6	문화도시과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봉은사 목 사천왕상 보존처리) [훼손된 불상(손가락 부러짐) 수리]	10,000 시 7,000 구 3,000	신규
7	문화도시과	개포주공1단지 문화시설 건립 [기부채납부지 문화시설 건립 기술검토 및 타당성 조사, 정비계획 변경 용역]	192,598	
8	문화도시과	새해 해맞이 행사 [2025 삼성 해맞이공원 추진 시 계약절차 등 문제로 2025년부터 Y-1년도 예산으로 편성]	50,000	
9	문화도시과	수서동593번지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설계비에 미포함된 지반조사 및 측량비 편성 2023년 추경 설계비 19억 편성 후 명시이월, 2024년 5월 공모선정, 6월 기본설계 예정]	49,500	

(단위 : 천원)

다. 세출예산 편성 현황

○ 기능별

(단위: 백만원)

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120,418 100.0%	38,417	87	17	3,214	165	12,392
	31.90%	0.07%	0.01%	2.67%	0.14%	10.29%
	보 건	농 립 해 양 수 산	산 업·중 소 기 업·에 너 지	교 통 및 물 류	국 토 및 지 역 개 발	예 비 비 및 기 타
	7,077	59	16,258	18,955	10,525	13,252
	5.88%	0.05%	13.50%	15.74%	8.74%	11.00%

○ 조직별

(단위: 백만원)

계	행정국	기획 경제국	복지 생활국	미래 문화국	도시 환경국	안전 교통국	미래전략 기획단	보건소	의회 사무국
120,418	13,796	52,621	12,497	3,213	5,732	23,877	△35	8,611	106
100.0%	11.46%	43.70%	10.38%	2.67%	4.76%	19.83%	△0.03%	7.15%	0.09%

○ 성질별

(단위: 백만원)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	예비비및기타
120,418	11,643	3,479	5,677	19,586	56,887	23,146
100.0%	9.67%	2.89%	4.71%	16.27%	47.24%	19.22%

라. 추경편성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	예산액
1	총무과	「강남구 2청사」 조성	2,119
2	기획예산과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및 예탁	35,919
3	지역경제과	2024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12
4	문화도시과	개청50주년 <강남의 시간을 걷다> 발간	95
5	문화도시과	빛과 소리 축제	280
6	문화도시과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봉은사 시왕도 보존처리)	85
7	문화도시과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봉은사 목 사천왕상 보존처리)	10
8	문화도시과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전주 이씨 광평대군과 묘역 주변 정비)	340
9	도시계획과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용역	22
10	공원녹지과	청담가로공원(썬터) 노후환경 개선	543
11	공원녹지과	수서역 6번출구 만남의 광장 조성	100
12	교통행정과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교통카드 지원	63
13	도로관리과	도산대로 1길 주변 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	912
14	도로관리과	언주로 837~803 주변 보도정비 공사	450
15	치수과	빗물받이관리 특별전담반 확대 시행 운영	90
16	치수과	언주로 103길 27주변외 6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1,090
17	혁신전략과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산업 정책연구 용역	20
18	건강관리과	마음투자 지원사업	520
19	건강관리과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사업	55

3. 주요 검토 사항

가. 「강남구 2청사」 조성 관련(청사기금과 연계 검토 필요)

○ 현 청사의 건물 노후화 및 행정 조직의 확대에 의한 공간 협소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사무공간의 태부족 문제는 자칫 행정의 비효율과 민원 응대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물리적 사무공간 확보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청사 관련 비용 지출의 이원적 구조의 적정성 여부

- 2청사 조성과 관련하여 ①일반회계에 월 임차료 및 부대경비 21억 1,898만 1,000원 편성 ②청사기금에 임차보증금 350억원 편성하여 제출되었음. 한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¹⁾에 따르면 “구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경비”를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2청사 관련 지출구조를 기금과 일반회계로 이원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동일 목적의 사업 비용을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이원적으로 지출하게 될 경우 사업의 성과나 투입 비용의 총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음. 기금과 일반회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둘째, 신청사 건립 불확실성에 따른 2청사 임차 장기화 및 비용 문제

- 지난 제317회 임시회에 구청장이 제출한(24.2.2.제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회수가 가능한 임차보증금 350억 외에 매년 약 17억원의 임차료 및 부대 경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해당 비용추계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임차료 및 부대 경비는 소모성 경비로 매년 인상 가능성 있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구청사 건립부지 매입 및 건축비

2. 구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경비

3. 구청사 건립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비

4. 그 밖에 구청사 건립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신청사 건립이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해당 2청사는 장기간 청사로서 기능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바, 소모성 경비의 장기간 투입으로 인한 재원 활용의 적정성, 합리성, 기회비용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아울러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입 등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비용추계서*

(* 24. 2. 2.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비용추계서 일부 발췌)

1. 비용발생 요인 : 임차보증금 및 임차 부대경비(임차료, 관리비, 시설비 등 포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격기준 : 대상지 감정평가 의거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기타 부대경비
 - 비용추계기간 : 2024. 7월 ~ 2028. 12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합계
구분	-	-	-	-	-	-	-
	소계(a)	-	-	-	-	-	-
세입	○ 임차보증금	35,000,000	-	-	-	-	35,000,000
	○ 임차료	402,000	804,000	804,000	804,000	804,000	3,618,000
	○ 부대경비	2,1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5,700,000
	소계(b)	37,502,000	1,704,000	1,704,000	1,704,000	1,704,000	44,318,000
□ 총 비용(a-b)		37,502,000	1,704,000	1,704,000	1,704,000	1,704,000	44,318,000

- 기금적립금을 통한 임차보증금 350억 재원조달
- 구비(지방세 수입)를 통한 임차료 및 부대경비(일반운영비, 시설비) 재원조달

○ 셋째, 수선비 부담 주체

- 추경안에는 인테리어 공사비와 별개로 2청사 기본 보수비 3,535만 5,600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용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한편,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정부청사관리규정은 국가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됨) [별표 2] 청사임대차계약준칙을 참고해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비 부담 사항이 각각 명시되어 있음.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선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2]

청사임대차계약준칙

15. 수선비의 부담 구분 :

가. 임대인은 건물 구조체 및 공동부분, 공용설비의 유지보전에 필요한 수선을 할 의무를 갖도록 정한다.

나. 임차한 사무실의 기본구조 이외의 간벽·천정·유리·전구·소모성기구 등 임차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부분에 대한 수선비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정한다.

나. 신규사업 관련

○ 교통행정과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교통카드 지원”

- 고령운전자 중 실운전자의 면허반납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자 강남구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하려는 것임.

〈참고〉 강남구 연도별 65세이상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건수(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고건수	457	510	541	586

→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사업 취지는 인정됨. 참고로 동작구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중 실제 운전자에게 1년간 34만 원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²⁾ “시장은 고령운전자에게 재정지원을 시행함에 있어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사업(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교통카드 지원: 70세 이상 최초 1회 1인당 10만원)과의 연계 설명이 필요함.

○ 치수과 “빗물받이관리 특별전담반 확대 시행 운영”

- 빗물받이관리 특별전담반 운영 유지를 위하여 인건비 9천만 2천원 편성을 요청함. 추경 확정 이후 전담반 인력 채용 등 관련 절차가 이루어질

2)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재정지원 방법 등)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불편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카드 지급 등의 방안으로 제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게 재정지원을 시행함에 있어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텐데 통상 장마가 6월 하순경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적시 추진을 위해서는 추경보다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는 편이 더 적절했을 것으로 보임.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예산 투입의 시기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임.

다. 증액사업 관련

○ 본예산에 소요예산 전액을 계상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만 편성하였다가 증액한 경우

- 총무과 “인력운영비”

2024년도 본예산에 구청장을 포함한 9급 공무원까지의 기본급을 70%만 편성하였다가, 이번 추경에서 공무원 기본급을 90%까지 편성하기 위하여 인력운영비를 114억원 증액 요청함[사업설명서 없음. 추경예산안 182쪽 참조].

한편,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212억원 발생하였는데 결산 결과와 연계하여 금번 추경의 증액 경위, 본예산에 70%만 반영했던 이유 및 추경 규모의 타당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또한 인력운영비 114억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면서 최소한의 사업설명서도 제출하지 않아 추경 사유 등을 검토에 한계가 있는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2023년도 본예산	2023년도 추경	2023년도 지출액	2024년도 본예산	2024년도 추경요구액
총무과	인력운영비*	144,171,769	-	122,975,157	133,406,097	11,401,040

- 질병관리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의 재원 비율은 기금보조금 30%, 시비 35%, 구비 35%임에도 당초 본예산 편성 시 구비 부담 부분 중 일부만 편성하고 금번 추경을 통해 나머지 부분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보임. 당초 구비 부담 비율 35%를 전액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마찬가지로 질병관리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역시 구비 부담 부분 중 본예산에 미편성한 일부 금액을 추경을 통해 증액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부서의 설명이 필요함.

○ 본예산 편성 당시 예산 추계의 적정성 문제

- 공원녹지과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결산 결과 2023년 지출액은 15억 7,357만원이었으나 집행부에서는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8억 1,637만원을 편성하였음. 사업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물량 증가, 민원 반영 등을 위해 추가 재정 소요분을 추경에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본 예산안 편성 시 과거 실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의약과 “강남구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

2024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2억 5천만원 대비 △46.9% 감액한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1억 1,900만원(88.3%)을 증편성 요청하였으며, 본예산과 추경안을 합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수준임.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2023년도 본예산	2023년도 추경	2023년도 지출액	2024년도 본예산	2024년도 추경요구액
공원 녹지과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1,217,089	650,195	1,573,572	816,371	500,000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1,447,431	-	1,405,515	1,395,807	22,800
의약과	강남구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	253,786	-	253,349	134,786	119,000

- 불확실한 세수여건 속에서 재정 절감 노력은 이해되지만 무리한 감축은 오히려 사업의 안정성,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고 집행부의 예산 추계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과거 집행을 및 사업 수요 현황,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 등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의 적시 투입, 계획적, 체계적, 효율적 사업 수행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문화도시과 “새해 해맞이 행사”

- 해당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3천만원이었고 2024년 본예산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5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바 증액 규모,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또한 본예산과 추경안의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현장운영 및 안전관리 인건비는 13만원→15만원으로 증액된 반면 사회자 인건비는 140만원→10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포토존 170만원→500만원, 애드벌룬 120만원→300만원으로 증액되는 등 본예산과 연계하여 산출근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니어센터”

- 증편성 주요 내용은 은곡시니어센터 관련 위탁운영비, 감리비 등임. 사업설명서상 은곡시니어센터의 준공일은 24.6.30.로 준공 일정에 따른 관련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감리비 등을 본예산에 미편성한 경위와 감리비의 추경 편성으로 인한 준공 일정 지연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라. 감편성 사업 관련

○ 총무과 “강남구청사기금 전출금(감편성)”

-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한 강남구 청사기금 전출금 4,824,890천원 중 아래와 같이 기금으로 전출할 수 없는 시비 재원 246,935천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감편성하려는 것임.

연 번	소관부서	사 업 명	삭 감 액	재 원
1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32,450	<u>시비:72,915</u> 구비:59,535
2	가족정책과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213,040	<u>시비:106,520</u> 구비:106,520
3	보건행정과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	△244,753	<u>시비:67,500</u> 구비:177,253
	합 계		△590,243	<u>시비:246,935</u> 구비:343,308

- 청사기금 전출금을 편성하는 과정 중 부서에서 기금으로 전출할 수 없는 시비재원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던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기획예산과 “정책개발추진단 운영(감편성)”

- 소액이긴 하지만 24. 3. 1. 정책개발추진단 운영 종료를 이유로 기정액 1,223만원 중 △1,140만원(△93.2%)을 감편성 요청하였음.
해당 사업의 2024년 본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정책개발 컨설팅, 정책실행 컨설팅 각각 30회, 도서 및 자료 구입 50건 등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의 계속성을 전제하고 당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24. 3. 1.자로 정책개발추진단 운영을 종료하게 된 경위와 본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지 못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마. 연내 집행 가능성 관련

-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이월이 전제된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이므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의 추경 필요성, 추경 규모의 적정성, 집행계획, 집행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문화도시과 신규사업 “개청 50주년 「강남의 시간을 걷다」 발간”은 사업기간이 2024. 7. ~ 2025. 7.로 사업설명서 상 내년 4월 이후 책자 편집 작업을 거쳐 7월에 책자를 배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예: 책자제작비 1,260만원)의 삭감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도시계획과 신규사업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용역”의 용역기간은 24.7~25.12. 임.
- 혁신전략과 “개포4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기간은 24.8.~25.8.임.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기정액 대비 37.2% 증가한

11억 6,297만원을 증액 요청함.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5억 1,928만 6,310원 이월, 3억 5,792만 2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추경 규모 및 이월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함.

[마무리 의견]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지방세가 2022회계연도보다 약 491억원 감소하는 등 앞으로의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세수의 안정적 확보 노력 및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적시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임. 또한 추가경정예산이 본예산 성립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기 정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금번 추경안이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특히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의 경우 산출근거의 적정성, 연내 집행가능성, 시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추경 편성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과 예산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운 영 위 원 회 소 관

○ 의원급여 지급 등 (p.7)

- 사업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23.12.14.)에 따른 의정활동비 상한액 인상으로 지급범위 현실화
-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1,567,594	1,461,758	105,836	7.2%
국고보조금				0.0%
시비보조금				0.0%
자체재원	1,567,594	1,461,758	105,836	7.2%

- 의 견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23.12.14.)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2024.5.17.)으로 의정활동비를 2024. 1.부터 소급지급함에 따라 부족한 의원급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 1억5백8십3만6천원을 편성한 것임. 인상전후의 세부내역은 다음표를 참조하기 바람.

- 의정활동비 인상분 지급 : 2024. 5월 부터~ (*1~4월분 소급분 지급)
- 추진대상 : 총 24명 (2024년도 강남구의회 의원, 1월 퇴직자 포함)
- 추진내용 : 의원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
- 의정활동비 인상 세부내역

구분	인상 전(A)	인상 후(B)	증가액(A-B) * 추경편성
계	303,600,000원	409,435,460원	105,835,460원
의정활동비 (구의원의정자료 수집연구비,구의 원보조활동비)	303,600,000원 (1,100,000원*23명*12월) * 2024년도 본예산	- 1월~4월 기 집행액 → 97,852,680원 - 5월 집행(예정)액 → 70,082,780원 ·1,500,000원*23명(5월) ·400,000원*22명*4개월+ 400,000원*9일/31일* 1명+400,000원* 20일/30일*1명 (1월~4월 소급분) - 6월~12월 집행액 → 241,500,000원 (1,500,000원*23명*7월)	- 400,000원*22명*12월 - 235,460원*1명*1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 행정국

총무과

○ 「강남구 2청사」 조성(신규) (p.181)

- 사업내용 : 강남구 2청사 조성에 따른 본청 부서 사무실 전면 재조정 추진
- 소요재원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2,118,981	0	2,118,981	순증
자체재원	2,118,981	0	2,118,981	순증

- **의견** : 노후하고 협소한 現청사 내 효율적인 부서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연계 및 공간적 집합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강남구 2청사를 새로이 조성하는데 필요한 21억1천8백9십8만1천원을 새로이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가 과다하지 않는지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 **국의 선진행정 벤치마킹 (p.182)**

- 사업내용 : 해외 선진국가 시찰견학 등 벤치마킹, 우리구 주최 국제행사 홍보 등
- 소요재원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140,300	92,300	48,000	52.0%
자체재원	140,300	92,300	48,000	52.0%

- **의견** :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한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려는 것으로 기존 대비 52% 증편성하려는 바 다른 자치단체 예산편성과 지금까지 추진효과를 비교하여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 **강남구청사기금 전출금(감편성) (p.183)**

- 사업내용 : 강남구 청사기금 기금적립 전출금 편성
- 소요재원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4,577,955	4,824,890	△246,935	△5.1%
시비보조금	0	246,935	△246,935	△100.0%
자체재원	4,577,955	4,577,955	0	0.0%

- **의견** : 2024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의원발의로 시비까지 포함하여 48억 2천4백8십9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한 바 삭감액 중 시비재원 총 246,935천원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액만큼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사업에서 시비를 감편성하려는 것임. 향후에는 예산심의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임.

소관부서	사업명	삭감액	재원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32,450	시비:72,915 구비:59,535
가족정책과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213,040	시비:106,520 구비:106,520
보건행정과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	△244,753	시비:67,500 구비:177,253
합계		△590,243	시비:246,935 구비:343,308

주민자치과

○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p.187)

- 사업내용 : 동청사 시설 개보수 및 안전 점검 등 관리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2,462,779	2,415,779	47,000	1.9%
자체재원	2,462,779	2,415,779	47,000	1.9%

- **의견** : 도곡로 327(한티역 인근) 공영노외주차장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및 주민 요구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2024년 본예산 보다 많은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 원칙이 아닌 것으로 보임.

○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p.187)

- 사업내용 : 강남구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자에게 답례품 지급(기부금의 30%)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71,067	20,067	51,000	254.1%
자체재원	71,067	20,067	51,000	254.1%

- **의견** : 2023년 연말 고향사랑기부 급증으로 2024년 답례품지급비 예산 전액이 전액 소진됨에 따라 추가편성하려는 것임. 다만,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경예산보다 본예산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답례품의 종류도 적정한 것인지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 비영리민간단체 등 공익활동 지원 (p.187)

- 사업내용 :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 구정참여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499,352	447,371	51,981	11.6%
자체재원	499,352	447,371	51,981	11.6%

- **의견** :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 사회단체 사무실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과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 사무국장 직원변경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한 바 환경개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인건비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전출금 (p.188)

- 사업내용 : 2023년 강남구에 모금·접수된 고향사랑 기부금을 고향사랑 기금에 전입 처리 하고자 함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57,547	30,000	127,547	425.2%
자체재원	157,547	30,000	127,547	425.2%

- **의견** : 2023년 고향사랑 기부금 예상액 30,000천원 → 실제 기부금 157,547천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였으나 기금에 전입처리하려는 것임. 다만, 사전에 제도가 도입될 당시 기금을 설치하려는 관심 없이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적극행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 대응하는 행정 필요해 보임.

2 기 획 경 제 국

기 획 예 산 과

○ 정책개발추진단 운영(감편성) (p.201)

- 사업내용 : 다변하고 급증하는 구민 행정수요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834	12,232	△11,398	△93.2%
자체재원	834	12,232	△11,398	△93.2%

- **의견** : 정책개발추진단 운영 종료(2024.3.1.字)에 따른 감편성을 보이나 본 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에 반영해 놓고 추경에 감편성하는 것은 예측행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p.201)

- 사업내용 : 구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자문 지원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185,380	954,380	231,000	24.2%
자체재원	1,185,380	954,380	231,000	24.2%

- **의견** : 강남구 중요소송(행복요양병원 관련) 2심 승소에 따른 사례금 187,000천원 지급 등 중요소송 수입료 집행에 따른 해당예산 조기 소진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임.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법적 검토를 동반한 행정이 필요해 보임.

- 강남구 중요소송(구립미술관 관련) 지정에 따른 수입료 33,000천원 지급
* 중요소송 수입료 편성예산 231,000천원 중 220,000천원 1분기 집행 완료(95.2%)

○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신규) (p.202)

- 사업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 예탁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35,918,662	0	35,918,662	순증
자체재원	35,918,662	0	35,918,662	순증

- **의견** :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33억원), (통합계정: 32,6억1천8백6십6만2천원)에 예탁하려는 것임. 세부적인 설명은 필요해 보임.

지역경제과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감편성) (p.205)

- 사업내용 :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소비자에는 혜택을 주고 관내 소상공인에게는 카드수수료 등 부담을 완화,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4,921,500	5,441,500	△520,000	△9.6%
시비보조금	240,000	760,000	△520,000	△68.4%
자체재원	4,681,500	4,681,500	0	0.0%

- **의견** :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할인보전금 시비 지원 축소에 따른 감편성임.

○ 2024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신규) (p.205)

- 사업내용 : 작업환경 개선생산성 향상 설비지원, 실태조사, 컨설팅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2,100	0	12,100	순증
자체재원	12,100	0	12,100	순증

- **의견**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 공모 및 사업비 매칭 (최대 555만원, 市 70%, 區 20%, 자부담 10%)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수요맞춤형 작업환경 개선지원,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등 세부적인 선정방법, 지원내용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 강남구 스마트팜 운영 (p.205)

- 사업내용 : 소규모 체험형 스마트팜 리빙랩 및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74,160	64,160	10,000	15.6%
자체재원	74,160	64,160	10,000	15.6%

- **의견** : 스마트팜 시설 보수에 따른 추경예산 시설비 10,000천원을 편성한 것임. 세부적인 내역은 아쿠아포닉스 컨트롤러(센서) 보수 7,000천원,

스마트팜 입구 사인물 제작·설치 3,000천원으로 관리운영 예산으로 보임.

○ **친환경 힐링텃밭 운영 (p.205)**

- 사업내용 : 친환경 힐링텃밭 운영 및 관리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309,266	260,745	48,521	18.6%
시비보조금	25,404	25,404	0	0.0%
자체재원	283,862	235,341	48,521	20.6%

- **의견** : 제2힐링텃밭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용자계정) 전출금 (p.206)**

- 사업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 지원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0,000,000	0	10,000,000	순증
자체재원	10,000,000	0	10,000,000	순증

- **의견** : 고금리 및 경영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저리의 용자지원을 확대하여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100억원을 전출하려는 것임. 사업내용, 지원 자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필요해 보임.

 **일 자 리 정 책 과**

○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p.213)**

- 사업내용 : 이동노동자 밀집지역 내 쉼터 추가 조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68,000	0	68,000	순증
국고보조금	34,000	0	34,000	순증
자체재원	34,000	0	34,000	순증

- **의견** : 이동노동자란 오토바이 배달기사, 택시기사, 대리기사, 택배기사, 보험중사자, 요양보호사, 학습지교사 등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군의 종사자로 역삼동, 논현동 등 상권밀집지역 내 음식점이 많고, 1인 가구 주거밀집지역이 많아 배달서비스 이용률 서울시 최대규모로 알려져 있음. 국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시설 설치후에도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p.214)

- 사업내용: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IT박람회인 'CES2025'에 강남구 소재 스타트업의 참가를 지원하여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824,753	671,160	153,593	22.9%
자체재원	824,753	671,160	153,593	22.9%

- **의견**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바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임.

○ 마을기업 육성(감편성) (p.214)

- 사업내용: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참여하여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단위의 기업활동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0	20,000	△20,000	△100%
국고보조금	0	10,000	△10,000	△100%
시비보조금	0	5,000	△5,000	△100%
자체재원	0	5,000	△5,000	△100%

- **의견** : 2024년 마을기업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마을기업 미선정에 따른 감편성으로 보임. 미선정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3 미래 문화국

문화도시과

○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지원 (p.293)

- 사업내용: 강남문화원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강좌 확대 운영으로 1명의 인력 채용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499,062	475,896	23,166	4.8%
시비보조금	44,250	44,250	0	0.0%
자체재원	454,812	431,646	23,166	5.3%

- **의견** : 문화강좌 프로그램 추가 개설에 따른 직원 인건비 3명에서 4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수강용 탁자 구입에 따른 예산으로 보이나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자체예산으로 해결하고 사업비만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새해 해맞이 행사 (p.293)

- 사업내용: 해맞이 공연, 새해 해맞이 카운트 다운, 가훈 쓰기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90,000	40,000	50,000	125.0%
자체재원	90,000	40,000	50,000	125.0%

- **의견** : 다음해의 새해 해맞이 행사비용을 추경에 반영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1월1일에 행사를 준비하려면 전년도에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되나 다음 해의 소요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있어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개청50주년 「강남의 시간을 걷다」 발간(신규) (p.294)

- 사업내용: 강남구 시대별 역사, 인물 등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스토리텔링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95,000	0	95,000	순증
자체재원	95,000	0	95,000	순증

- **의견** : 개청 50주년에 따른 강남의 문화, 역사를 집약한 기념서적을 발간하려는 것으로 기획 및 원고집필: 65,400천원, 인쇄: 14,600천원, 일반관리비:15,000천원을 반영한 것임. 다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음.

○ 빛과 소리 축제(신규) (p.294)

- 사업내용: LED를 활용한 다양한 빛 조형물 설치 · 운영, <세상의 모든 소리, 소리 판타지>를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소리 콘텐츠를 지역 문화단체와 협업하여 공연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280,000	0	280,000	순증
시비보조금	200,000	0	200,000	순증
자체재원	80,000	0	80,000	순증

- **의견** : 시비 200,000천원, 구비 80,000천원 매칭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공모선정에 따른 축제로 추경에 반영한 것임. 한강 잠원지구에 빛을 이용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가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연으로 보임.

○ 문화시설 관리 (p.296)

- 사업내용: 청사 유지 보수 및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203,869	994,528	209,341	21.0%
자체재원	1,203,869	994,528	209,341	21.0%

- **의견** : 논현동 논현문화마루는 2023.6. 완공되어 시설관리 예산은 강남문화재단에 민간위탁금으로 교부하고 부설주차장 전환에 따른 운영비는 도시관리공단에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교부하는 것임. 자산취득비는 區 문화도시과에서 구매 및 설치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금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개포주공1단지 문화시설 건립 (p.298)

- 사업내용: 개포주공1단지 기부채납부지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용역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92,598	0	192,598	순증
자체재원	192,598	0	192,598	순증

- **의견** : 개포주공1단지 기부채납부지 정비계획 변경용역: 124,598천원, 개포주공1단지 기부채납부지 문화시설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68,000천원을 편성한 것으로 개포동 660-1 및 660-12 일대에 일반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현재의 청소년·아동 복합시설 및 청소년 문화시설 부지를 일반 문화시설로 부지로 용도 변경하는데 필요한 변경용역비를 편성한 것임. 당초 소규모 생활복합문화시설로서 기부채납부지 내 두 개의 필지 중 하나의 필지에 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했으나, 해당 부지를

통합하여 대공연장(1550석)이 포함된 전문공연장(문예회관)과 주차시설(350대),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및 강남예술단 연습실, 동북합문화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여가시설을 도입하는 안(案)으로 변경추진에 따른 용역비임. 다만,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해 보임.

위치	기존 부지현황			변경 후 부지현황		
	시설명	시설종류	면적	시설명	시설종류	면적(병합)
개포동 660-1일대	문화시설	청소년·아동 복합시설	2,089㎡	문화시설	일반 문화시설	6,158㎡
개포동 660-12일대	문화시설	청소년 문화시설	4,069㎡			

○ 구립도서관 도서 구입 (p.299)

- 사업내용: 2024년 본예산 편성 후인 2023. 12. 대치도서관 연장 운영이 결정됨에 따라 도서구입 예산 미반영분 추가 편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936,415	799,839	136,576	17.1%
자체재원	936,415	799,839	136,576	17.1%

- **의견** : 개포1동 주민도서관 신규개관에 따른 도서구입비(5,000권, 88,000천원) 및 24년 예산 편성 후인 2023.12월 대치도서관 연장운영 결정됨에 따라 도서구입 예산 미반영분에 대한 예산(2,760권, 48,576천원)을 편성한 것임.

○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p.299)

- 사업내용: 바닥보 철판보강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474,360	454,390	19,970	4.4%
자체재원	474,360	454,390	19,970	4.4%

- **의견** : 부분구조안전진단 결과(2024. 1. 12.), 세곡도서관의 일부 보부재(2B5)의 평가하중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진단 받아 긴급 구조보강 공사비(일부 보의 하중 부재강도 부족)를 반영한 것임.

○ 수서동 593번지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p.300)

- 사업내용: 수서동 593번지(세곡2지구 도서관 부지)에 우리구 거점도서관 역할을 수행하는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지식문화서비스를 제공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49,500	0	49,500	순증
자체재원	49,500	0	49,500	순증

- **의견** : 수서동 593번지(세곡2지구 도서관 부지)에 우리구 거점도서관 역할을 수행하는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지식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계용역 관련, 측량 및 지반조사 비용을 편성한 것임.

○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 (p.300)

- 사업내용: 도산공원 내 복합건물(기념관, 주차장, 도서관) 건립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897,620	0	897,620	순증
자체재원	897,620	0	897,620	순증

- **의견** : 설계공모 심사 및 자문위원회 수당, 도산공원 복합건물 기본계획 변경(지하4층 포함)에 따른 도산공원 복합건물 지상부분 설계비(증가분) 892,720,000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봉은사 시왕도 보존처리)(신규) (p.301)

- 사업내용: 「봉은사 시왕도」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85,000	0	85,000	순증
시비보조금	59,500	0	59,500	순증
자체재원	25,500	0	25,500	순증

- **의견** :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2024. 1. 선정되어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임. 봉은사 시왕도 보존처리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봉은사 목 사천왕상 보존처리)(신규) (p.302)**

- 사업내용: 「봉은사 목 사천왕상」 보존처리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0,000	0	10,000	순증
시비보조금	7,000	0	7,000	순증
자체재원	3,000	0	3,000	순증

- **의견** : 시비 70%: 구비 30% 매칭사업으로 2024. 1. 선정되어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임. 봉은사 목 사천왕상 보존처리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전주 이씨 광평대군파 묘역 보수정비)(신규) (p.302)**

- 사업내용: 「전주 이씨 광평대군파 묘역」 주변 배수로 정비 및 석축 공사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340,000	0	340,000	순증
시비보조금	238,000	0	238,000	순증
자체재원	102,000	0	102,000	순증

- **의견** : 시비 70%: 구비 30% 매칭사업으로 2024. 1. 선정되어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임. 전주 이씨 광평대군파 묘역 보수정비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생활체육과

○ **강남구체육회 운영 지원 (p.307)**

- 사업내용 : 강남구 체육 활성화를 위한 단체 사업 지원 및 보조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902,561	883,036	19,525	2.2%
국고보조금	204,472	204,472	0	0.0%
시비보조금	102,235	102,235	0	0.0%
자체재원	595,854	576,329	19,525	3.4%

- **의견** : 강남구체육회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려는 것으로 시비 매칭 없이 자체예산으로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임.

○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 (p.307)

- 사업내용 : 주민개방 학교 마사토운동장 및 율현공원 게이트볼장 환경정비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08,800	87,000	21,800	25.1%
자체재원	108,800	87,000	21,800	25.1%

- **의견** : 강남세곡체육공원 외 3개소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야외탁구대 설치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이용 및 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탄천 파크골프장 조성 (p.307)

- 사업내용 :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 교량, 창고, 쉼터(교육장)용 데크 설치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457,626	0	457,626	순증
자체재원	457,626	0	457,626	순증

- **의견** : 장애인과 어르신 이용편의를 위한 교량 및 쉼터(교육장)용 데크 설치, 운영 관리를 위한 창고를 추가 설치하려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조성당시부터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보 건 소

위 생 과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p.385)

- 사업내용 : 순회방문지도를 통한 위생관리, 대상별 식생활 교육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630,000	475,875	154,125	32.4%
국고보조금	189,000	142,763	46,237	32.4%
시비보조금	220,500	166,556	53,944	32.4%
자체재원	220,500	166,556	53,944	32.4%

- **의견**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으로 총 센터 민간위탁금 6억3천만원 중 일부만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 농수산물 수거검사 (p.385)

- 사업내용 : 관내 유통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방사능 안전관리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45,600	11,400	34,200	300.0%
시비보조금	22,800	11,400	11,400	100.0%
자체재원	22,800	0	22,800	순증

- **의견** :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수산물 소비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감시원의 활동기간을 늘려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다만, 동일 매칭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재원이 2배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질병관리과

○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감편성) (p.389)

- 사업내용 : 표본감시기관 지정, 표본감시 신고·보고 및 결과 환류, 표본감시 지정기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의료관련감염병 발생률 및 감염관리 과정지표 점검 및 보고를 통한 운영 성과 관리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7,200	35,000	△27,800	△79.4%
기금보조금	7,200	35,000	△27,800	△79.4%

- **의견** : 2024년 본예산에 보조금 확정내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보조금 감액에 따른 감편성으로 보임.

○ 국가예방접종 실시 (p.391)

- 사업내용 :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6,890,593	5,742,460	1,148,133	19.9%
국고보조금	2,067,181	2,067,181	-	0.0%
시비보조금	2,411,706	2,411,706	-	0.0%
자체재원	2,411,706	1,263,573	1,148,133	90.8%

- **의견** :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임에도 구비만 반영한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암환자 의료비 지원(전환사업) (p.392)

- 사업내용 : 국가암검진을 통해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또는 폐암을 진단받은 건강보험료 하위50%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암 의료비 지원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459,462	339,150	120,312	35.5%
시비보조금	227,150	227,150	0	0.0%
자체재원	232,312	112,000	120,312	107.4%

- **의견** : 시비: 65%, 구비: 35% 매칭사업으로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이나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이 증가한 사유와 시비 매칭없이 구비만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미지급금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4년 본 예산 편성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p.392)

- 사업내용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홍보 및 소득·재산 조사 의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원 사업비 분기별 예탁 및 정산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332,843	255,990	76,853	30.0%
기금보조금	99,774	99,774	0	0.0%
시비보조금	116,403	116,403	0	0.0%
자체재원	116,666	39,813	76,853	193.0%

- **의견** :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비를 예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다만, 매칭사업임에도 구비만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사업추진은 아니라고 보여짐.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감편성) (p.393)

- 사업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건강검진 수검독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사업비 분기별 예탁 및 정산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81,000	92,000	△11,000	11.9%
기금보조금	38,500	44,000	△5,500	12.5%
시비보조금	19,250	22,000	△2,750	12.5%
자체재원	23,250	26,000	△2,750	10.5%

- **의견** :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이나 2024년 국가건강검진사업운영(일반건강검진) 보조금 총 확정내시 감액으로 감편성한 것임.

건강관리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전환사업)) (p.399)

- 사업내용 : 출산 가정으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지원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2,630,667	1,725,768	904,899	52.4%
시비보조금	1,478,000	799,326	678,674	45.9%
자체재원	1,152,667	926,442	226,225	19.6%

- **의견** : 시비: 7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를 예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사업) (p.400)

- 사업내용 : 소득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 대상으로 시술비 지원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2,485,229	1,380,000	1,105,229	80.1%
시비보조금	1,615,399	897,000	718,399	80.1%
자체재원	869,830	483,000	386,830	80.1%

- **의견** : 시비: 65%, 구비: 35% 매칭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신선배아 시술비, 동결배아 시술비의 지원대상을 확대·시행하려는 것임. 지원대상 소득기준 폐지(2023. 7월)로 지원건수 증가 및 2024년 2월부터 난임지원 정책 확대에 따라 시술비 지원횟수가 22회 → 25회로 확대됨에 따라 증편성한 것임.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p.400)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영아(만 2세 미만)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450,000	326,400	123,600	37.9%
국고보조금	135,000	97,920	37,080	37.9%
시비보조금	157,500	114,240	43,260	37.9%
자체재원	157,500	114,240	43,260	37.9%

- **의견**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으로 저소득층 영아 (만 2세 미만)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를 예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기저귀 (8만원 → 9만원), 조제분유(10만원 → 11만원) 인상분을 반영한 것임.

○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 (p.401)

- 사업내용 : 출산모에게 모유수유 매니저 자택방문 모유수유 관리 서비스 제공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69,000	53,200	15,800	29.7%
시비보조금	69,000	53,200	15,800	29.7%

- **의견** : 시비 100% 사업으로 출산 후 8주 이내 모유수유 희망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매니저가 자택방문하여 모유수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사무관리비를 1백만원 감편성하고 모유수유 서비스 지급 강사 인력 (84명)을 증원하는 것임. 2024년 3월부터 거주제한이 서울시 6개월 거주 → 서울시 거주로 확대됨에 따른 것임.

○ 마음투자 지원사업(신규) (p.401)

- 사업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1인당 총 8회)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520,000	0	520,000	순증
국고보조금	260,000	0	260,000	순증
시비보조금	130,000	0	130,000	순증
자체재원	130,000	0	130,000	순증

- **의견**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2024년 7월부터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1인당 총 8회)하는 신규사업으로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사업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수행하는 것임.

○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사업(신규) (p.402)

- 사업내용 : 24시간 정신 응급입원 치료 수행을 위한 병상 운영비 지급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55,200	0	55,200	순증
기금보조금	27,600	0	27,600	순증
자체재원	27,600	0	27,600	순증

- **의견** : 기금: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24시간 정신 응급입원 치료 수행을 위한 병상 보호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치매안심센터 운영 (p.402)

- 사업내용 : 치매조기검진(선별, 진단검사) 및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쉼터 및 치매가족 지원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657,372	1,223,460	433,912	35.5%
기금보조금	688,536	471,580	216,956	46.0%
시비보조금	356,268	247,790	108,478	43.8%
자체재원	612,568	504,090	108,478	21.5%

- **의견** :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한 것임. 다만, 민간위탁금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분리해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여짐.

의약과

○ 올바른 의약품 사용 (p.411)

- 사업내용 : 마약류 범죄 예방 캠페인 및 마약류 취급자 관리·교육
구민 대상 지역사회연계 마약류 오남용·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76,416	62,400	14,016	22.5%
자체재원	76,416	62,400	14,016	22.5%

- **의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비 100%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공동대책 협의회 구축 및 마약류 근절 캠페인 확대, 마약류 감시 및 캠페인 출장 관련 시간선택제임기제 출장여비를 편성한 것임.

○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감편성) (p.412)

- 사업내용 : 건강증진 개별상담 및 한의약적 진료(한약 투약, 침 시술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7,660	30,000	△12,340	△41.1%
시비보조금	17,660	30,000	△12,340	△41.1%

- **의견** : 2024년도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 감편성하여 확정내시된 것임.

○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급금(행복요양병원 운영) (p.412)

- 사업내용 :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4,468,027	3,519,027	949,000	27.0%
국고보조금	1,660,000	1,297,500	362,500	28.0%
자체재원	2,808,027	2,221,527	586,500	26.4%

- **의견** : 2024년 본예산편성시, 민간투자사업 예산부족으로 3분기 예산만 편성하여 1분기 시설 운영비, 시설 관리운영권 설정 정부지급금 지급 예산 9억4천9백만원을 편성한 것임. 다만, 관리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임.

○ 강남구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 (p.412)

- 사업내용 : 서울남부혈액원과 협약을 통해 강남구 소재의 헌혈의 집 3개소에서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상품권 지원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253,786	134,786	119,000	88.3%
자체재원	253,786	134,786	119,000	88.3%

- **의견** : 서울남부혈액원과 협약을 통해 강남구 소재의 헌혈의 집 3개소에서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나 헌혈에 대한 예산을 전부 구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일부는 혈액원에서 부담하도록 유도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업 중 1천만원 이하 사업목록 임.

국명	부서명	2024 사업명	예산안 (A+B)	기정예산 (A)	추경예산 (B)
		합계	1,631,940	1,632,798	△858
미래문화국	문화도시과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	6,680	△6,680
미래문화국	문화도시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40,000	35,600	4,400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219,057	222,840	△3,783
보건소	질병관리과	표본감시운영경비	13,740	12,500	1,240
보건소	질병관리과	보건소결핵관리사업	129,017	124,947	4,070
보건소	질병관리과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263,781	263,788	△7
보건소	질병관리과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492,530	490,980	1,550

보건소	질병관리과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	1,836	1,940	△104
보건소	질병관리과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	2,676	2,920	△244
보건소	건강관리과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114,610	109,110	5,500
보건소	건강관리과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50,300	55,300	△5,000
보건소	건강관리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105,193	104,993	200
보건소	건강관리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99,200	201,200	△2,000

<종합의견>

-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된 것임.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1조 4,181억 736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04억 184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82억 910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69% 증액되었음.
-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523,584,736천원으로 36.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안은 78,187,546천원으로 17.55%가 증액되었음.
- 추경재원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3억 12만 9천원, 순세계 잉여금 1,077억 9,965만 8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 6,786만 3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125억 5,109만 4천원 임.
- 세출사업은 120,418백만원 중 신규사업 19개 42,725,435천원, 증액사업 112개 65,348,136천원, 감액사업 44개 10,433,209천원, 보조금반환 61개 22,778,124천원으로 편성됨.
- 이 중 행정재경위 소관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재해재난 대비 등 안전강화사업> 8,073백만원 중 문화도시과 897,620천원, <생활환경·건강증진사업 6164백만원> 중 총무과, 주민자치과, 생활환경과 건강관리과 총사업비 3,220,607천원, <지역경제, 일자리 활성화사업> 10,467백만원 중 주민자치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총사업비 10,466,693천원, <문화증진사업> 문화도시과 2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 추경안에서 19개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이고 증액사업이 무려 112개로 본예산 편성계획이 문제가 있다고 볼 소지도 있으며 보조금 반환이 61개 사업 227억원에 달해 예산이 사장되어 반환되지 않고 주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해 보임. 특히 보건소 추경 예산안 중 하나의 개별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고 일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부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이고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재원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있는 바 매칭비율에 맞게 부담을 분담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복 지 도 시 위 원 회 소 관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추가 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인 바, 검토보고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복지생활국과 도시환경국 및 안전교통국 세출분야를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음.
- 집행부가 신규사업 또는 순증하여 편성한 추경안(일반회계)을 보면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의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개편 용역(신규사업, 22백만원), 환경과의 강남구 열환경개선을 위한 쿨루프 및 그린커튼 사업(72백만원), 공원녹지과의 강남 힐링 숲 조성(15억원), 청담가로공원(쉼터) 노후환경 개선(신규사업, 543백만원), 수서역6번 출구 만남의 광장 조성(신규사업, 100백만원),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교통카드 지원(신규사업, 63백만원), 도산도로 1길 주변의 3개소

도로정비공사(신규사업, 911백만원), 언주로 837~803 주변 보도정비공사(신규사업, 450백만원), 치수과의 물받이관리 특별전담반 확대 시행운영(신규사업, 90백만원), 언주로 103길 27주변외 6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신규사업, 1,090백만원), 미래전략기획단 혁신전략과의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산업 정책연구용역(신규사업, 20백만원)이 있음.

- 특별회계의 순증사업으로는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전액 국비, 14백만원), 도시환경국 환경과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전액 국비, 8백만원),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의 도산공원 복합시설 지하주차장 건설 설계 용역(34백만원)이 있음.
- 추경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³⁾에 근거하며 본예산과 대비된 추경안 편성 요건으로서 ‘변경할 필요성’ 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추경 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추경안 편성 요건으로서 목적 적합성·예측불가능성·보충성·시급성·연내집행 가능성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표〉 추경안 편성 일반요건

3)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요건	세부내용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시급성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연내 집행가능성	해당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예산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추경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편성해야 할 것이며, 추경안이 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원칙에 부합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금번 추경안 편성사유를 보면 신규사업과 일부 순증사업을 제외하면 국·시·구비 매칭사업의 매칭비율 변동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집행부가 예산편성과정에 있는 매년 9월경 가내시 형태로 매칭비율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을 통보하는 바, 최종 예산이 확정되고 예산서가 발부되는 다음해 2~3월경 확정내시액을 다시 통보하는 관례가 반복되고 있음.
- 이외에도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세입 추계의 오류 등으로 인해 자체 예산 변경 또는 추경안이 확정되면 순차적으로 우리 강남구도 다시 예산변경하거나 추경안을 편성해야 하는 재정적 순환고리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4) 제33조에 따라 국가사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무와 지방사무가 구분되고 그에 따라 권한의 위임과 함께 재정적 자치권 한도 존중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같은 특별법이 실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예산 변경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나, 이로 인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정치적 대의기관으로서 예산심의권이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하겠음.
- 예산총칙의 간주규정을 행정편의를 위해 남용하지 말고 예산사업의 집행 상황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함과 함께 예산변경(이용, 전용, 변경사용)보다는 추경안을 필요시마다 제출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음으로써 지역의 정치적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검토를 거쳐 정당성과 명분을 득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매칭사업의 변동에 따라 강남구의 예산수요가 과확적으로 추계되어 편성되지 못하는 관계로 상당한 불용액이 시현되어 귀중한 재원이 사장(死藏)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 바,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적정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10월 임시회 또는 11월 정례회에 추경안을 정례화하여 제출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이양받은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구·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예산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반회계

가. 중대재해예방실

1) 중대재해시민예방 (p.169)

가) 사업내용 : 화재 및 감전 사고 유발 등 재해 발생 가능성(빈도)과 위험성(강도)이 높은 전기 재해 예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합동 정밀점검을 실시(증편성)하여 중대재해를 사전 발굴·차단하고자 함

나)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103,621	49,684	53,937	108.6%
자체재원	103,621	49,684	53,937	108.6%

- 의견 :

- 중대재해예방실은 시설 관련 재해 중 전기 화재 발생 가능성 및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금번 추경안은 2024년 2월 7일 발생한 수서동 주민센터 에어컨 실외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공공시설 중 노후되거나 소규모시설에 대한 전기 화재 및 전기 감전 등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음.

<표> 관리대상 : 총 88개 시설(공중이용시설 80개소, 법정의 동청사 8개소) (24. 3. 31.기준)

합 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공중이용시설								법정 외 동청사
	구분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어린이집	운동·수련·노유자시설	의료기관	도로교량	옹벽	
소	연면적 3,000㎡ 이상	2개 이상 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 200㎡ 이상	연면적 43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등	시설물안전법상 1·2층 교량 등	높이가 5미터 이상이며 길이가 100미터 이상	연면적 2,000㎡ 미만 법정 기준 미달 동청사	
총88개소	80	4	25	35	3	1	9	3	8

- 금번 사업은 각 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이외에 중대재해예방실이 메타점 검) 차원에서 실시하는 성격이 있는 바,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은 (대형 시설과는 달리) 통상 전기수전용량⁶⁾이 75kw이하로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거나 대행하지 않고 건물소유자가 자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점검 및 진단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현장에서의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 다만 기후변화로 인해 잦은 집중 폭우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가로등시설 등 전기사용 시설물에 의한 누전 위험이 상당한 바, 시설물 관리부서로부터 인적·물적으로 독립된 부서의 메타 점검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번 사업을 확대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위와 같은 사업은 재난 재해 예방 활동 차원의 성격도 있으므로, 앞으로 안전교통국 소관의 재난안전기금(2023년도말 조성액 163억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나. 복지 생활 국

❖ 복지 정책 과

1)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p.173)

가) 사업내용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지원

나)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7,976,905	7,844,576	132,329	1.7%
시비보조금	6,919,324	6,803,623	115,701	1.7%
자체재원	1,057,581	1,040,953	16,628	1.6%

다) 의 견 :

5) 메타 점검이란 각 시설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안전 검사·점검·인증 등이 규정대로 이행되는 지를 외부에서 확인하는 점검을 말함.

6) 수전용량: 건물에 전기를 받기 위해 설비한 변압기 용량의 총합

- 관내 설치된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에 충당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사항인 바,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2)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장 (p.175)

가) 사업내용 :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화된 시설·장비를 보수·보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1,589,195	250,092	1,339,103	535.4%
시비보조금	924,367	-	924,367	순증
자체재원	664,828	250,092	414,736	165.8%

다) 의견 :

- 일부 종합복지관(표 참조)의 내진보강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및 노후차량 교체로 소요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추경안으로서 시비보조금과 매칭하여 편성되었음.

<표> 사업 대상

복지관명 (소재지)	운영형태	사업규모	사업내용	지원조건	
강 남 (개포로109길 5)	민간위탁	2,131.66㎡ (지하층~3층)	리모델링(내진보강) 공사	시가능보강	시비70%,구비30%
능 인 (양재대로 340)	법인직영	모닝 (2011)	노후차량 교체(경차)	시가능보강	시비25%,구비65% (자부담10%)
태화기독교 (광평로 185)		마티즈 (2008)			

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감편성)(p.178)

가) 사업내용 : 지역주민의 수요와 서비스 공급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다양한

육구 및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128,652	159,408	△30,756	△19.3%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64,326	79,704	△15,378	△19.3%
시비보조금	32,163	39,852	△7,689	△19.3%
자체재원	32,163	39,852	△7,689	△19.3%

다) 의견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집행되고 있는 바, 국시비 매칭사업 (50%·25%·25%)이나 국시비분이 감액되어 확정내시된 사항을 반영한 감편성 추경안이라고 하겠음.

❖ 사회보장과

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감편성)(p.183)

가) 사업내용 : 근로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통장 지원을 통해 근로 유인 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탈빈곤 촉진 및 일하는 저소득·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자립 촉진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3,378,444	3,450,219	△71,775	△2.1%
국고보조금	2,026,755	2,069,878	△43,123	△2.1%
시비보조금	945,842	965,923	△20,081	△2.1%
자체재원	405,847	414,418	△8,571	△2.1%

다) 의견 :

- 근로하는 저소득층 가구 및 15세 이상 39세 이상 청년의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인 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서 국비와 시비의 예

산감액에 따른 확정내시를 반영한 감편성 추경안이라고 하겠음.

❖ 어 르 신 복 지 과

1) 은곡경로당 신축(감편성)(p.191)

가) 사업내용 : 40년 이상된 노후 구립 경로당 신축을 통해 시설 노후화로 발생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400,000	1,769,508	△1,369,508	△77.4%
자체재원	400,000	1,769,508	△1,369,508	△77.4%

다) 의 견 :

- 은곡경로당 신축을 위해 시설비및부대비 항목으로 17억6천9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17억원이 해당 사업 충당을 위해 2023년 12월 5일자로 교부가 확정된 바, 기정예산에서 특별교부세를 감안하여 13억원을 감편성한 추경안임.
- 다만 당초 기정예산에는 은곡경로당 인테리어공사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나, 기정예산 본 공사비 항목에서 내부공사비로 반영하고자 추경안으로 자체재원 4억원을 존치한 바, 이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자체재원을 유연성 있게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됨.

2) 어르신시니어센터 운영(p.193)

가) 사업내용 : 어르신 시니어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	전년도당초예산액 (B)	비교증감 (C=A-B)	증감률 (D=C/B)
계	661,502	548,765	112,737	20.5%
자체재원	661,502	548,765	112,737	20.5%

다) 의 견 :

- 은곡경로당 신축 사업과 연계된 바, 은곡경로당 철거후 은곡시니어센터로 설치하면서 추경안을 통해 필요한 내부(인테리어) 공사비 4억원을 반영한 바, 내부 공사에 관한 감리비 4백7십만원과 프로그램실 비품 등 기자개 구입비 2천만원 등을 반영한 추경안임.
- 은곡경로당을 은곡시니어센터로 확장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유연성 있게 추경안으로 반영하여 필요 경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추경안이라고 하겠음.

<표>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준공일	수탁법인
삼성 시니어센터	삼성동 100-8번지	459.88㎡ (지하2층~지상4층)	2024.6.30.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 (2023.9.11.~2028.9.10.)
은곡 시니어센터	세곡동 360-18번지	639.19㎡ (지하1층~지상2층)	2024.6.30.	-

3) 경로당 운영(p.196)

가) 사업내용 : 정부시책 ‘경로당 중식 5일제 확대 지원’ 과 관련하여 경로당에 주식비 및 급식 편의 물품을 추가 지원하여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3,715,377	3,072,577	642,800	20.9%
국고보조금	35,865	35,865	0	0.0%
시비보조금	362,259	327,609	34,650	10.6%
자체재원	3,317,253	2,709,103	608,150	22.5%

다) 의 견 :

- 경로당 운영 사업은 구립 및 사립 경로당 173개소에 난방비와 냉방비를 비롯하여 주·부식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정예산에는 주3회 중식제공에 필요한 비용이 편성되어 있으나, 정부의 ‘경로당 중식 5일제 확대 지원’ 과 관련하여 주 2일분의 주식비를 추가 하며, 중식제공 편의를 위한 식기세척기 구매비용(165개소, 대당 1백만원, 전액 구비)을 추경안으로 편성하였음.
- 위 추경안 사업은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중식을 주 5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부정할 수 없으나, 정부시책임에도 국비 지원 없이 주식비 추가분(4억7천7백만원)의 대부분을 자체재원(구비 4억4천3백만원, 시비 3천4백만원)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의문이라고 하겠는 바, 앞으로 국비 지원 확보를 위한 집행부 차원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장애인복지과

1) 장애인복지관 운영(감편성) (p.201)

가) 사업내용 : 장애인복지관 6개소(구립2, 법인4)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14,108,686	13,402,819	705,867	5.3%
국고보조금	93,524	66,105	27,419	41.5%
시비보조금	9,056,943	9,168,083	△111,140	△1.2%
자체재원	4,958,219	4,168,631	789,588	18.9%

다) 의견 :

○ 위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인 바, 기정예산의 편성 기준을 보면 매칭비율이 다음과 같음.

- 장애인복지관 운영: 시비 75%, 구비 25%
- 장애인복지관 시책추진사업: 시비 95%, 구비 5%
- 장애인복지관 특화사업: 구비 100%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국비 40%, 시비 36%, 구비 24%

○ 그러나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의 시구비 매칭 비율이 변경(시구비 75%·25% → 70%·30%)로 시비분이 감액 변경된 바, 이를 반영한 추경예산안이라고 하겠음.

2)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p.205)

가) 사업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후 시설 또는 장비등의 기능보강을 실시하여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520,945	470,945	50,000	10.6%
시비보조금	25,000	0	25,000	순증
자체재원	495,945	470,945	25,000	5.3%

다) 의견 :

- 위 사업의 기정예산은 전액 구비(100%)로 편성되고 있으나, 서울시는 관내 강남세움복지관 안전사고예방 스마트 환경 기능 보강(IOT설치) 명분으로 필요 설치비(5천만원, 2대분, 대당 2천5백만원)를 시구비 매칭비율로 (50%:50%) 추경안에 편성되었음.
- 추경안 편성 요건으로서 예측불가능성·보충성·시급성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 바,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3)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p.207)

가) 사업내용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43,147,539	42,949,644	197,895	0.5%
국고보조금	18,658,889	18,825,315	△166,426	△0.9%
시비보조금	16,119,211	15,696,641	422,570	2.7%
자체재원	8,369,439	8,427,688	△58,249	△0.7%

다) 의견 :

- 위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비율(국비 50%, 시비32.5%, 구비17.5%)로 기정예

산이 편성된 바, 가내시와 다르게 감소된 확정내시분을 반영음.

- 다만 서울시는 시비추가사업으로서 최종증장애인과 같이 활동지원사가 기피하는 클라이언트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추가 활동비(전액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한 시비분 5억 3천만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하였음.

4)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p.209)

가) 사업내용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9,908,596	9,634,930	273,666	2.8%
국고보조금	4,954,298	4,817,465	136,833	2.8%
시비보조금	2,477,149	2,408,733	68,416	2.8%
자체재원	2,477,149	2,408,732	68,417	2.8%

다) 의견 :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 비율(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예산이 편성되는 바, 확정내시분에 따른 변경 내역을 추경안에 반영한 사항임.

5) 장애수당 지급-기초(감편성)(p.211)

가) 사업내용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장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1,572,492	1,631,256	△58,764	△3.6%
국고보조금	786,246	815,628	△29,382	△3.6%
시비보조금	550,372	570,940	△20,568	△3.6%
자체재원	235,874	244,688	△ 8,814	△3.6%

다) 의견 :

- 장애수당(기초) 지급 사업⁷⁾은 국시구비 매칭 비율(국비 50%, 시비 35%, 구비 15%)로 예산이 편성되는 바, 확정내시분에 따른 변경 내역을 추경안에 반영한 사항임.

6) 장애수당 지급-차상위 등(감편성)(p.213)

가) 사업내용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장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395,542	418,902	△23,360	△5.6%
국고보조금	197,771	209,451	△11,680	△5.6%
시비보조금	138,440	146,616	△8,176	△5.6%
자체재원	59,331	62,835	△3,504	△5.6%

다) 의견 :

- 장애수당(차상위) 지급 사업⁸⁾은 국시구비 매칭 비율(국비 50%, 시비 35%, 구비 15%)로 예산이 편성되는 바, 확정내시분에 따른 변경 내역을 추경안에 반영한 사항임.

7)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중전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사업 대상으로 함. 관내 해당되는 주민이 2,168명인 것으로 추산됨.

8) 장애수당 지급(차상위)의 사업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중전3~6급) 중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지원(감편성)(p.215)

가) 사업내용 :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바,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등으로 한정됨.

서비스	서비스 횟수	이용기간	월 이용료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주1회(월4회) (회당 1시간)	최대 12개월	168,000원 (지원금 151,200원 /본인부담 16,800원)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193,040	216,940	△23,900	△11.0%
국고보조금	96,520	108,470	△11,950	△11.0%
시비보조금	48,260	54,235	△5,975	△11.0%
자체재원	48,260	54,235	△5,975	△11.0%

다) 의 견 :

○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지원은 국시구비 매칭 비율(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예산이 편성되는 바, 확정내시분에 따른 변경 내역을 추경안에 반영한 사항임.

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감편성)(p.217)

가) 사업내용 : 관내 강남세움센터 4층(강남구 광평로60길 22)에 위치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위기 사례관리, 긴급돌봄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음.

<표> 센터현황

운영법인	기관명	소재지	종사자	위탁기간
(사)전국장애인 부모연대 (대표 : 윤종술)	강남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센터장 : 황숙현)	광평로60길 22 강남세움센터	4명	2021.10.1. ~2024.9.30. (3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185,862	197,269	△11,407	△5.8%
시비보조금	93,381	99,085	△5,704	△5.8%
자체재원	92,481	98,184	△5,703	△5.8%

다) 의견 :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시구비 매칭 비율(시비 50%, 구비 50%)로 예산이 편성되는 바, 시비분 확정내시에 따라 감편성하여 추경안에 반영한 사항임.

❖ 보 육 지 원 과

1) 어린이집 운영 지원(서울시)(p.221)

- 가) 사업내용 : 차액보육료,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재능기부, 영유아반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6,150,300	5,781,052	369,248	6.4%
시비보조금	3,408,365	3,198,449	209,916	6.6%
자체재원	2,741,935	2,582,603	159,332	6.2%

다) 의견

-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은 시비와 구비를 매칭하여 편성하는 항목이 다수 있는 바, 시비분의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추경안에 반영한 사항임.
- 다만 같은 사업의 2023년 결산자료를 보면 예산현액 74억4천만원에서 54억7천만원을 집행하고 19억7천만원을 불용하여 불용률 26.5%를 시현한 바, 이는 저출산 등으로 아동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증감 추이를 면밀히 살펴서 귀중한 재원이 불용되어 사장(死藏)되지 않고 추경안 등을 통해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2)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감편성)(p.223)

가) 사업내용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치료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장애아 보육 서비스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6,150,300	5,781,052	369,248	6.4%
시비보조금	3,408,365	3,198,449	209,916	6.6%
자체재원	2,741,935	2,582,603	159,332	6.2%

다) 의 견 :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은 시비와 구비를 매칭하여 편성하는 바, 시비분의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추경안에 반영한 사항임.
- 다만 민간자본이전항목은 증액 편성된 바, 이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내 안전바 및 계단 손잡이 등을 설치·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1개소에서 2개소로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음.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감편성)(p.225)

가) 사업내용 : 영아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만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 개선비 및 운영비를 지급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5,143,289	6,494,123	△1,350,834	△20.8%
국고보조금	896,542	954,987	△58,445	△6.1%
시비보조금	3,619,168	4,870,645	△1,251,477	△25.7%
자체재원	627,579	668,491	△40,912	△6.1%

다) 의견 :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국시구비 매칭 및 전액 시비로 편성하는 내역으로 구성된 바,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의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이며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는 전액 시비임.
- 같은 사업은 매칭 비율 및 시비분의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추경안에 반영된 사항임.

4)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지원(p.227)

가) 사업내용 :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보육도우미를 배치하여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공백 없는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6,015,622	5,881,778	133,844	2.3%
국고보조금	1,129,392	1,129,392	0	0.0%
시비보조금	2,970,165	2,903,243	66,922	2.3%
자체재원	1,916,065	1,849,143	66,922	3.6%

다) 의견 :

-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은 시구비 매칭 사업(시비 50%, 구비 50%)인 바,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의 인건비 지원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추경안임.(보조교사 월 지원단가 1,042,000원 → 1,068,000원, 보육도우미 월 지원단가 1,011,000원 → 1,067,320원)
- 같은 사업의 결산자료를 보면 예산현액 60억7천만원이고 집행액 53억 1백만원으로서 불용액 7억7천만원으로 불용률 12.7%를 시현한 바 있으며, 불용사유를 보면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채용 실적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탓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의 감소 추세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바, 집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이 불용잔액으로 사장(死藏)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5)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감편성)(p.229)

가) 사업내용 : 부모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전문가가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2024년 보건복지부는 사업 폐지를 결정하였음.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0	12,180	△12,180	△100.0%
국고보조금	0	6,090	△6,090	△100.0%
시비보조금	0	3,045	△3,045	△100.0%
자체재원	0	3,045	△3,045	△100.0%

다) 의견 :

- 학부모와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비 등 지원 사업은 2024년 사업폐지된 바, 이를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는 내역으로 추경안이 편성되었음.(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6313(2023.12.28.)호)

6) 영유아 보육료 지원(감편성)(p.231)

가) 사업내용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 및 원활한 사회적 활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23,438,995	25,823,351	△2,384,356	△9.2%
국고보조금	10,547,548	11,620,508	△1,072,960	△9.2%
시비보조금	9,024,013	9,941,990	△917,977	△9.2%
자체재원	3,867,434	4,260,853	△393,419	△9.2%

다) 의견 :

-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 매칭비율로 편성되는 바, 확정내시에 따라 추경안에 (감)편성되었음.

7)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감편성)(p.233)

가) 사업내용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 및 원활한 사회적 활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6,785,320	10,080,000	△3,294,680	△32.7%
시비보조금	6,785,320	10,080,000	△3,294,680	△32.7%

다) 의견 :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시비 100%로 편성되는 바, 확정내시에 따라 추경안에 (감)편성되었음.
- 2023년 결산자료를 보면 예산현액 104억1천1백만원, 집행액 74억, 불용액 30억1천1백만원으로 불용률 28.9%를 시현하였으나, 2024년 추경안에는 2023년 집행액인 74억보다 적은 67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8)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p.235)

가) 사업내용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으로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부실 급식 없는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585,434	573,423	12,011	2.1%
시비보조금	292,717	286,711	6,006	2.1%
자체재원	292,717	286,712	6,005	2.1%

다) 의견 :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는 바, 시비분 확정내시에 따라 추경안에 편성되었음.

9) 공기청정기 관리비용 지원(p.237)

가) 사업내용 : 관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279,107	289,836	△10,729	△3.7%
시비보조금	195,375	202,885	△7,510	△3.7%
자체재원	83,732	86,951	△3,219	△3.7%

다) 의견 :

- 관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시비 70%, 구비 30% 매 청비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는 바, 시비분 확정내시에 따라 추경안이 편성되었음.

10) 교사 대 아동비율 시범반 지원(p.239)

가) 사업내용 :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위한 신규채용 담임교사 인건비 100% 또는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244,540	127,584	116,956	91.7%
시비보조금	122,270	63,792	58,478	91.7%
자체재원	122,270	63,792	58,478	91.7%

다) 의견 :

- 2024년 본예산 편성시에는 같은 사업에 대해 어린이집 4개소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담임교사 인건비를 지원으로 소요예산을 추계하였으나, 금번 추경안은 동행어린이집⁹⁾을 포함한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아동비율 시범반

9) 서울시는 2024년부터 현원 감소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을 재정지원, 환경개선, 보

18개소를 추가로 포함하기 위하여 시구비(시비 50%, 구비 50%) 매칭비율로 증액 편성되었음.

11)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운영(감편성)(p.241)

가) 사업내용 :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맞춤형 육아정보 제공, 부모 자조모임 지원 등을 맡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0	59,672	△59,672	△100.0%
시비보조금	0	29,836	△29,836	△100.0%
자체재원	0	29,836	△29,836	△100.0%

다) 의 견 :

- 육아지원 코디네이터는 초보엄마아빠를 위해 ‘아이 배변훈련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말에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집 근처 놀이터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 동네 ‘0세반’ 이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지 등 육아가 처음이라 궁금한 게 많은 초보 엄마아빠에게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강남구는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시행하고 있었음.(시비 50%, 구비 50% 매칭구조)
- 그러나 2024년 3월 29일자로 서울시는 2024년 사업비 미편성으로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사업 변경을 통보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추경안이 제출되었음.
-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사업을 변경하기에 앞서서¹⁰⁾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지속 필요성 등에 관해 우리 강남구와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바, 앞으로 금번 폐지된 사업과 같이 협치를 무색하게 하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에 대한 엄중한 항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조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동행어린이집’ 으로 신규지정하여 운영지원하고 있음.

10) 김창영 기자, [단독]서울시, 육아·복지 보조금 줄삭감...박원순표 재취업 사업 절반 삭감, 2023.12.21.

12) 서울형 0세 전담반 운영지원(감편성)(p.243)

가) 사업내용 : 생후 12개월 미만 보육아동 전담반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에 따른 운영비 및 교사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43,876	110,808	△66,932	△60.4%
시비보조금	21,938	55,404	△33,466	△60.4%
자체재원	21,938	55,404	△33,466	△60.4%

다) 의견 :

- 서울형 0세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 3개소의 운영비 및 교사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인 바, 시구비 매칭비율(시비 50%, 구비 50%)로 예산이 편성되며, 시비분 확정내시에 따라 (감)편성된 추경안임.

13) 아동수당 지원(p.245)

가) 사업내용 : 관내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으로 매월 10만원 지급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25,977,128	25,696,392	280,736	1.1%
국고보조금	15,579,144	15,414,955	164,189	1.1%
시비보조금	7,270,267	7,193,646	76,621	1.1%
자체재원	3,127,717	3,087,791	39,926	1.3%

다) 의견 :

- 아동수당 지원사업의 예산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비율로 국시 구비 매칭예산구조를 갖고 있는 바, 변경내시 통보를 반영하여 추경안으로 편성되었음.

13) 가정양육수당 지원(p.247)

가) 사업내용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7세(86개월) 미만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게 아래 표와 같이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임.

〈표〉 사업내용

구분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지원 대상	2021.12.31.이전 출생한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7세(86개월) 미만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소득수준 무관)	2021.12.31.이전 출생한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7세(86개월) 미만 초등학교 취학 전 장애등록 아동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소득수준·장애등급 무관)
지원 금액	- 24개월부터 지원 종료 시까지 : 월 10만원	- 24 ~ 35개월까지 : .월 20만원 - 36개월부터 지원 종료 시까지 : 월 10만원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7,266,411	6,352,870	913,541	14.4%
국고보조금	3,269,885	2,858,791	411,094	14.4%
시비보조금	2,797,568	2,445,855	351,713	14.4%
자체재원	1,198,958	1,048,224	150,734	14.4%

다) 의견 :

-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로 국시구비 매칭예산구조를 갖고 있는 바, 확정내시 통보를 반영하여 편성된 추경안임.

14)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p.249)

가) 사업내용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0~1세 영아의 부모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모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임.

<표> 사업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부모급여 (영아수당)	2022.11.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0~1세 영아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소득수준·장애등급 무관)	- 0~11개월까지: 월 100만원 - 12~23개월까지: 월 50만원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39,184,157	36,009,546	3,174,611	8.8%
국고보조금	17,041,564	16,204,296	837,268	5.2%
시비보조금	14,580,005	13,863,675	716,330	5.2%
자체재원	7,562,588	5,941,575	1,621,013	27.3%

다) 의견 :

- 사업의 내용을 보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23개월 아동이 어린이집 및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급여로서 0~11개월까지는 월 100만원, 12~23개월까지는 월 50만원을 지급함.
- 다만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0세 보육료 54만원의 (100만원과) 차액인 46만원과 1세 보육료 47.5만원의 (50만원과) 차액인 2만5천원을 지급

하는 내용임.

- 같은 사업은 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로 국시구비 매칭비율로 구성되는 바, 확정내시 통보를 반영하여 편성한 추경안임.

15) 출산양육 지원(p.251)

가) 사업내용 : 관내 거주 출산 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을 다음 표와 같이 지급하는 사업임.

<표> 사업내용

구 분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지원기준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1년 이상 (※ <u>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u>) · 대상아이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첫째 자녀: 200만원 · 셋째 자녀: 300만원 · 둘째 자녀: 200만원 · 넷째 이상 자녀: 500만원
지원방법	현금 (1회)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4,820,000	4,220,000	600,000	14.2%
자체재원	4,820,000	4,220,000	600,000	14.2%

다) 의 견 :

-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집행부는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인 관내 거주 출산가정의 보호자를 2,058명을 추산하였으나, 지원기준에 따라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 경과 후 지원 자격’ 을 갖춘 출산가정을 포함하면 2,351명으로 증가한 바, 이에 부족분을 추경안으로 편성한 사항임.

16)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감편성)(p.253)

가) 사업내용 :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육아부담을 덜어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아래 표와 같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임.

〈표〉 공동육아나눔터 현황

연번	명칭	위치	면적	근무인원	비고
1	개포점	강남구 개포로 617-8	63.7㎡	2명	
2	수서점	수서역세권 행복주택 A2BL, 210동 1층	168.3㎡	2명	2024. 8월 개관(예정)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110,230	149,448	△39,218	△26.2%
기금보조금(국비)	25,520	43,358	△17,838	△41.1%
시비보조금	31,968	53,348	△21,380	△40.0%
자체재원	52,742	52,742	0	0%

다) 의견 :

○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집행부는 수서점 공동육아나눔터의 개관일정을 2024년 4월로 예상하였으나, 수서점 공동육아나눔터가 위치하는 수서역세권 행복주택에 대한 LH측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관계로 2024년 8월로 개관이 연기된 바, 이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추경안이 편성되었음.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예산의 매칭비율은 기금보조금(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임.

17)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감편성)(p.257)

가) 사업내용 : 기존 돌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양육공백 가정에 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임.

〈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내용

구분	친인척형	민간형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조력자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지원조건	친인척 조력자 돌봄시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		
지원내용 (현금 또는 바우처)	돌봄 아동수	영아 1명	영아 2명	영아 3명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지원금액	월 30만원	월 45만원	월 60만원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496,800	810,000	△313,200	△38.7%
시비보조금	248,400	405,000	△156,600	△38.7%
자체재원	248,400	405,000	△156,600	△38.7%

다) 의견 :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시구비 매칭비율(시비 50%, 구비 50%)로 예산이 편성되며, 시비분 확정내시에 따라 (감)편성된 추경안임.
- 집행부의 설명에 따르면 대상자 중 친인척형을 선택하는 사례는 월평균 110~120명선이라고 하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소속 육아도우미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5명 이내라고 함.
- 같은 사업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시민 10명 중 5명(45.5%)은 아이를 베이비시터에게 맡겼을 때 불만족 사유 1위로 전문성(육아 경력·관련자격증 부족)을 꼽은 만큼 서울시의 민간업체(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선정이 중요한 상황이다.11)’ 라고 지적하고 있음.
- 서울시와 공조하여 주민의 욕구와 수요에 맞는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11) 오현주 기자, “민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여가부와 연계 필요“, 뉴스1, 2024.01.10.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3년 결산자료를 보면 같은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3천만원이고 집행액은 5천1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천3백만원으로 불용률 61.9%를 시현하였음.
- 다소 저조한 집행실적에 대해 집행부는 지원대상이 소득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으로 제한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같은 사업은 출산정책과 긴밀히 연계된 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대상 가정 발굴이 요망되며 그 외에도 제도상 지원대상 기준 완화를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적극 행정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18) 서울엄마아빠 택시 지원(감편성)(p.259)

가) 사업내용 : 관내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에 영아 1인당 연 10만원 택시 포인트 지급(바우처)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241,100	407,800	△166,700	△40.9%
시비보조금	120,800	204,900	△84,100	△41.0%
자체재원	120,300	202,900	△82,600	△40.7%

다) 의견 :

- 서울엄마아빠 택시지원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로 시구비 매칭비율(다만 홍보비는 전액 시비)로 구성되는 바, 확정내시 통보를 반영하여 편성한 추경안임.

※ 같은 사업은 2023년 강동구·마포구 등 16개 자치구에서 시범으로 진행한 바, 당초 목표했던 3만459명보다 15%가량 많은 3만5000명이 이용했다고 하며, 만족도는 양육자 10명 중 9명(92.2%)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함. 목적지 제한이 없는 바,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 사업 기간 병원과 약국(43.3%)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엄마아빠택시를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가족 모임 등(24.5%)에 가거나 공원 등 나들이(21.4%)를 하는 용도가 뒤를 이었다고 함.¹²⁾

❖ 가족정책과

1) 가사돌봄서비스 지원(감편성)(p.263)

가) 사업내용 :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바우처 지급[1가구 10회 지원 (1회 4시간)]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같은 사업으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유형은 (장보기를 제외한) 청소, 세탁, 정리정돈, 취사 등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397,200	425,360	△28,160	△6.6%
시비보조금	198,600	212,680	△14,080	△6.6%
자체재원	198,600	212,680	△14,080	△6.6%

다) 의견 :

- 가사돌봄서비스지원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로 시구비 매칭비율로 구성되는 바, 확정내시 통보를 반영하여 편성한 추경안임.

다. 도시환경국

❖ 도시계획과

1)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용역(신규)(p.267)

가) 사업내용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현재 절차 이행 중인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민간개발 활성화 및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12) 김원진 기자, 연 10만원 ‘서울엄마야빠택시’ 25개 자치구로 지원 확대, 경향신문, 2023. 1. 23.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22,000	-	22,000	순증
자체재원	22,000	-	22,000	순증

다) 의견 :

○ 같은 사업의 개요는 다음 표와 같음.

<표> 사업 개요

① 용역기간: 2024. 7. ~ 2025. 12.
② 총용역비: 22,000천원
③ 위 치: 강남구 일대 테헤란로변(강남역사거리~포스코사거리)
④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변경 및 높이 계획 검토
- 대상지 현황에 따른 개편된 인센티브 적용 항목 검토
- 계획 변경에 따른 공간구조 구상 및 시뮬레이션 분석
⑤ 추진근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안) (서울시 도시관리과-3952, 2024.4.18.)
- 용적률 체계 통합 및 단순화를 통해 도시변화에 대응·지원하는 유연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마련
⑥ 추진계획
- 2024. 7. : 용역계약
- 2024. 8. ~ 2025. 11. : 용역수행
- 2025.12. : 용역준공

○ 검토하건데 서울시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은 ① 광화문·여의도·강남 등 3도심 재개발 ② 한강 수변공간 재편 ③ 철도·도로 입체화 등으로 요약된다고 하겠음¹³⁾.

○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입안하며 추진함에 있어서 강남구 차원의 독자적인 도시계획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하겠으나, 금번 용역의 기간이 24년 7월부터 다음해 25년 12월이지만 총용역비가 2천2백만원에 그치는 바,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서 추경안으로 제출한 사업인지는 의문이라고 하겠음.

13) 손동우 기자,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 세운지구·여의도·서초가 떠오른다, 매일경제, 2023.7.21.

- 서울시와 중복되는 용역일 경우 불필요한 예산사업일 수 있고, 서울시와 상반되는 용역결과가 산출될 경우 그 결과를 원용하여 서울시에 대해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하겠음.
- 예산 추계 및 용역의 실효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환 경 과

1) 강남구 열환경 개선을 위한 쿨루프 및 그린커튼 사업(p.271)

가) 사업내용 : 노후 복지관 옥상에 태양열 차단을 위한 특수 도료 시공 및 어린이집 외벽에 덩굴성 식물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72,000	0	72,000	순증
국고보조금	36,000	0	36,000	순증
시비보조금	10,800	0	10,800	순증
자체재원	25,200	0	25,200	순증

다) 의 견 :

- 도시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쿨루프 및 그린커튼 사업을 시행하여 기후변화 피해를 예방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의 2024년도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매칭되어 편성된 추경안임.

※ 쿨루프 사업이라 함¹⁴⁾은 건물의 지붕에 차열 페인트를 도장함으로써 지붕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내용인 바, 햇빛과 태양열을 반사하는 효과가 있는 밝은 색의 차열페인트를 시공해, 지붕이 직접 받는 열기 축적을 감소시켜 건물 온도를 낮춰주는 원리를 활용하였음.

14) 박호원 기자, 어린이집 건물에 쿨루프 설치했더니 기온 '뚝', 한국유아교육신문, 2018.07.25.

그린 커튼¹⁵⁾은 건축물이나 구조물 외벽에 덩굴식물을 덮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벽면녹화 공법임.

- 같은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¹⁶⁾에 근거를 둔 정부 지원 사업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 공 원 녹 지 과

1)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p.275)

가) 사업내용 : 관내 위치한 근리공원인 도산근린공원 등 83개소의 노후시설물 정비 및 주민 불편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1,316,371	816,371	500,000	61.2%
자체재원	1,316,371	816,371	500,000	61.2%

다) 의 견 :

- 2023년 예산상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2억1천7백만원이 편성되어 집행잔액 7백만원으로 집행률 99%를 시현한 바 있으나, 2024년 예산편성 시 긴축예산 방침에 따라 8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음.

15) 이우성 기자, 경기도, 공공시설 87곳에 덩굴식물 '그린커튼' 조성 마쳐, 연합뉴스, 2021.09.22.

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에 종합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3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집행부는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 집행상황을 고려할 때 기정액 8억원은 24년 8월말 전액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이에 부족분을 추경안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예산사업편성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2) 강남 힐링 숲 조성(p.275)

가) 사업내용 : 관내 구룡터널 부근 경작지로 이용되어 온 대모산 산자락 훼손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힐링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1,500,000	0	1,500,000	순증
자체재원	1,500,000	0	1,500,000	순증

다) 의견 :

- 강남 힐링 숲 조성지는 개포동 638-5번지 일대인 바, 사계절 정원·피크닉 데크·숲속모험놀이터·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할 예정인 바, 같은 사업을 위해 2022년 전액 시비 2억원과 2023년 33억(시비 15억, 구비 18억)을 편성·집행한 바 있으나, 건축예산 편성 방침으로 2024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음.
- 집행부는 2024년 11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계속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금번 추경안에 전액 구비(자체 재원)로 15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강남 힐링 숲 조성 사업에 대한 기투자금액의 매몰비용 우려와 사업의 계속성 등을 감안하면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3) 도곡공원 정상부 커뮤니티 힐링공간 조성(p.28175)

가) 사업내용 : 도곡근린공원 정상부에 위치한 운동공간을 개선하여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860,000	60,000	800,000	1,333.3%
자체재원	860,000	60,000	800,000	1,333.3%

다) 의 견 :

- 도곡공원 정상부(도곡동 산32-6 일대)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헬스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이 있는 바, 집행부는 이를 철거하고 일부는 녹지로 조성하며 남은 부지는 주민편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같은 사업을 추경안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다만 집행부는 현재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운동시설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들과 협상 중에 있다고 함.
- 검토하건데 집행부가 확정된 방침 및 계획안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바, 주민과의 협의 과정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사업을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사전 절차 미흡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점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4) 청담가로공원(쉼터) 노후환경 개선(신규)(p.284)

가) 사업내용 : 노후된 청담가로공원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543,296	0	543,296	순증
자체재원	543,296	0	543,296	순증

다) 의 견 :

- 삼성해맞이공원과 인접한 위치에 있는 청담가로공원(삼성동 111-4 일대)의 노후화로 인해 바닥포장을 재정비하고 운동기구 교체하며 휴게시설 설치하고 편의시설(화장실)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인근 삼성해맞이공원

이용객의 증가 추이를 감안한 취지를 갖고 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5) 수서역 6번 출구 만남의 광장 조성(신규)(p.284)

가) 사업내용 : 노후된 청담가로공원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100,000	0	100,000	순증
자체재원	100,000	0	100,000	순증

다) 의견 :

- 관내 수서역과 인접한 수서동 727 일대(前수서역(남)공영주차장 부지)에 위치한 주차장 유희부지를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 사업으로서 우리 강남구에 재배정되어 집행되고 있는 바, 2023년 시비 15억(이월처리됨)과 2024년 시비 3억7천만원이 재배정된 바 있음.
- 수석역 6번 출구 만남의 광장조성 사업은 전액 서울시비로 잔디마당을 조성하고 공중화장실 및 시계탑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바, 금번 추경안은 우리 강남구 자체재원(1억원)으로 지하매설물 폐기물처리비와 수목식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되었음.
- 대상지는 대모산 등산로 입구 및 수서역과 인접해 있는바, 대모산을 이용하는 주민과 수서역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같은 사업을 충당하기 위한 추경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임.

6) 근린공원 유지관리(p.288)

가) 사업내용 : 관내 도산근린공원 등 85개소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원관리) 및 공원 물품구매, 공공요금 납부 등에 충당하기 위한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3,876,445	3,833,425	43,020	1.1%
자체재원	3,876,445	3,833,425	43,020	1.1%

다) 의견 :

- 근린공원 유지관리사업의 예산항목을 보면 ① 인건비(30억7천만원) ② 일반운영비(기정액 4억7천만원 → 추경안 5억1천만원) ③ 여비(1천만원) ④ 업무추진비(4백8십만원) ⑤ 재료비(2억6천만원) ⑥ 자산취득비(2천만원)으로 구성됨.
- 근린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료, 수도료 등)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운영비 항목에 있어서 공공요금 등의 인상분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족분(4천3백만원)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임.

7) 어린이공원 유지관리(p.290)

가) 사업내용 : 관내 어린이공원인 삼성목련어린이공원 등 62개소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원관리) 및 공원 물품구매, 공공요금 납부 등에 충당하기 위한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1,418,607	1,395,807	22,800	1.6%
자체재원	1,418,607	1,395,807	22,800	1.6%

다) 의견 :

- 근린공원 유지관리사업과 동일한 사유로 어린이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료, 수도료 등)를 포함하고 있는 일반운영비 항목에

있어서 공공요금 등의 인상분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족분(2천2백만원)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임.

8) 가로 녹지 소규모 정비(p.292)

가) 사업내용 : 관내 가로 녹지 내 나지 노출, 시설물 훼손, 민원, 폐기물 등 발생 시 정비하기 위한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599,268	399,268	200,000	50.1%
자체재원	599,268	399,268	200,000	50.1%

다) 의견 :

- 가로녹지 소규모 정비사업은 2023년 예산상 4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4년에는 6천4백만원 감액된 3억9천9백만원이 기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음.
- 집행부는 위험수목¹⁷⁾을 추가 정리하고(5천5백만원), 산책로를 정비하며(2천만원), 휠스 등 시설물을 추가 정비(1억2천5백만원)하기 위한 부족분 2억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가로녹지는 가로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공간에 나무나 꽃이 식재되어 있는 공간이 바, 녹지확보와 경관개선, 무단횡단 등 보행안전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현상에서 일정 정도 쉼터를 제공하는 가로녹지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부의 금번 사업의 추경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17) 수목의 쓰러짐 위험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이나 보행자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나무를 지칭함.

9) 시설녹지 유지관리(p.294)

가) 사업내용 : 시설녹지 내 시설물 정비, 수목 및 지피식물 보식, 전지·제초 등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1,610,333	1,590,131	20,202	1.3%
자체재원	1,610,333	1,590,131	20,202	1.3%

다) 의 견 :

- 시설녹지 유지관리 사업은 근린공원 유지관리사업 및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사업과 동일한 사유로 시설녹지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료, 수도료 등)를 포함하고 있는 일반운영비 항목에 있어서 공공요금 등의 인상분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족분(2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임.

10) 사계절 가로변 꽃길 조성(p.296)

가) 사업내용 : 압구정로 등 7개 노선의 가로변 녹지대 및 테마화단 계절꽃 식재와 청사 내 화단 관리 등을 위한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459,900	409,900	50,000	12.2%
자체재원	459,900	409,900	50,000	12.2%

다) 의 견 :

- 사계절 가로변 꽃길 조성 사업의 2024년 기정 예산은 2023년 예산 4억9백만원과 동일하게 책정된 바, 집행부는 ① 수서역 5번 출구 인접한 구역에 화단을 신규설치하고자 이에 따른 신규화단 꽃 식재 비용과 ② 관내 숲내교 교차로 인근의 테마화단 계절 꽃 식재 비용을 포함한 부족분 5천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추경안으로 제출한 사항인 바,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11)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소규모 정비(p.298)

가) 사업내용 :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내 노후 약수터와 화장실 등 시설정비 및 산림사면 덩굴 제거 등 공원환경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827,133	377,133	450,000	119.3%
자체재원	827,133	377,133	450,000	119.3%

다) 의견 :

- 집행부는 대모산내 위치한 노후 체력단련장(일원동 산56번지)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로 정비하며 그 외에도 주변 지역의 수목을 관리하기 위한 필요경비 3억 7천만원과 대모산내 산재한 발효화장실(8개소)의 외관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미관상 개선하기 위한 공사비 8천만원 등 4억5천만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일원동 산56번지에 위치한 체력단련장은 시설 노후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바,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운동기구를 배치한 체력단련장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바, 추경안 사업으로서 시급성과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발효화장실의 경우에도 미관상 외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바, 같은 사업의 추경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12) 산림서비스 증진(숲해설 운영)(감편성)(p.300)

가) 사업내용 : 숲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18,000	30,000	△12,000	△40.0%
국고보조금	9,000	15,000	△6,000	△40.0%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시비보조금	6,300	10,500	△4,200	△40.0%
자체재원	2,700	4,500	△1,800	△40.0%

다) 의견 :

- 대모산 숲해설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강사료는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매칭 비율로 구성되는 바,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감)편성하여 추경안으로 제출되었음.

13) 생태하천 유지관리(p.302)

가) 사업내용 : 도심하천인 양재천, 탄천, 세곡천 등 우리구 관내 하천의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2,935,082	2,877,486	57,596	2.0%
자체재원	2,935,082	2,877,486	57,596	2.0%

다) 의견 :

-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2023년 예산에는 29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긴축예산 기조에 따라 2024년 예산에는 전년대비 1억7백만원이 감액된 28억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 집행부는 공공요금 및 제세의 인상분(7백6십만원)과 하천 호안 정비 과정에서 훼손된 하천식생을 복구를 위한 수목식재 및 부엽토 등 필요 재료 구입(5천만원)을 위해 부족분(5천7백만원)을 편성하여 추경안으로 제출한 바, 예년 수준의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라. 안전교통국

❖ 교통행정과

1)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p.307)

가) 사업내용 : 관내 마을버스 운송사업 7개 업체(10개노선)의 운송적자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259,434	214,633	44,801	20.9%
자체재원	259,434	214,633	44,801	20.9%

다) 의견 :

-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사업은 시비 92.5%, 구비 7.5% 매칭비율로 편성되는 바, 시비분의 확정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추경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음.

2)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교통카드 지원(신규)(p.309)

가)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63,260	0	63,260	순증
자체재원	63,260	0	63,260	순증

나) 의견 :

- 강남구에 주민등록된 70세이상¹⁸⁾ 어르신 중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실효처리된 자 중 실운전자¹⁹⁾에게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1회에 한하

18) 2024년 기준 54.12.31. 이전 출생자

19) 자동차보험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로 자동차보험증의 피보험자 여부로 실

여 제공하는 신규사업임.

- 언론자료²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2%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바, 경찰청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교통사고는 9.7% 감소했지만, 고령자 사고는 29.7% 급증했다고 함.
- 관내 고령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사업은 촉진되어야 할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이를 위한 강남구 차원의 신규사업으로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교통카드 지원’은 시의적절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바,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3)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p.311)

가) 사업내용 : 관내 보호구역 유지관리 110개소(어린이94, 노인13, 장애인3)상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2,780,000	1,380,000	1,400,000	101.4%
자체재원	2,780,000	1,380,000	1,400,000	101.4%

다) 의 견 :

- 집행부는 2024년 1분기에 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강남경찰서·수서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한 바, 290여건에 달하는 정비 지적 사항이 발굴되었으며,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자체 통학로 안전점검에 따라 강남구에 102건의 (통학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요청을 보낸 바 있음.
- 집행부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부족 예산(14억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하여 제출한 바,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운전자임을 확인함.

20) 정세희 기자, “반납? 100만원 쥐도 안해!“…운전면허에 자존심 건 어르신들, 중앙일보, 2024.03.15.

❖ 도로관리과

1) 도로시설물 유지보수(p.315)

가) 사업내용 :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4,293,246	3,130,276	1,162,970	37.2%
자체재원	4,293,246	3,130,276	1,162,970	37.2%

다) 의견 :

- 집행부는 노후·불량한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한 기정예산 31억3천만원을 기편성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도로시설물 관련 민원사항을 적시에 처리하기 위해 필요예산 11억6천만원의 증편성분을 추경안으로 제출하였음.
-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는 주민의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업인 바, 위 사업의 추경안 편성은 목적적합성 및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2) 이면도로 유지보수(p.318)

가) 사업내용 : 노후화로 인하여 파손된 이면도로 및 보도 보수·정비 등을 하기 위한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5,216,987	3,925,247	1,291,740	32.9%
자체재원	5,216,987	3,925,247	1,291,740	32.9%

다) 의견 :

- 집행부는 노후화로 인하여 파손된 이면도로 및 보도 보수·정비 등을 위

한 기정예산 39억2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이면도로 관련 민원사항을 적시에 처리하기 위해 필요예산 12억9천만원의 증편성분을 추경안으로 제출하였음.

- 이면도로는 보행과 주차, 소규모 상업활동 등 생활공간으로서 기능과 함께 간선도로와의 연결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적인 특성을 갖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는 차량의 비정상적인 통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특히 훼손된 이면도로는 차량운행자와 보행자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리상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관내 이면도로의 특성과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상시 주의해야 할 사업 영역인바, 추경예산안으로서 목적적합성 및 시급성 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3) 보도 유지보수(p.320)

가) 사업내용 : 간선보도 및 측구 정비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2,813,712	1,913,712	900,000	47.0%
자체재원	2,813,712	1,913,712	900,000	47.0%

다) 의 견 :

- 집행부는 노후 보도 및 보도시설물 정비를 위해 기정예산으로 19억원을 기편성하고 있으나, 보행불편 민원사항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9억원의 증편성안을 추경안으로 제출하였음.
- 보도시설물 등은 주민의 안전에 중요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보행자 편의에도 기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업의 추경안은 목적적합성 및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4) 제설대책 (p.322)

가) 사업내용 : 제설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3,817,364	2,661,734	1,155,630	43.4%
시비보조금	240,000	240,000	0	0.0%
자체재원	3,577,364	2,421,734	1,155,630	47.7%

다) 의견 :

- 집행부는 폭한기의 폭설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제설용역비 및 제설제 구매 등을 위해 기정예산 26억6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제설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1억5천5백만원을 증편성하여 추경안으로 제출하였음.
- 검토하건데 관내에는 대규모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이면도로에도 군중이 혼잡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바, (혼잡상황에서) 폭설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사고 위험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 다수 산재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차원의 추경예산안으로서 목적적합성 및 시급성 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5) 도로조명시설 공공요금(p.325)

가) 사업내용 : 도로조명시설 및 가로등 유지보수반을 운영하고, 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를 편성 운영함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1,913,853	1,563,853	350,000	22.4%
자체재원	1,913,853	1,563,853	350,000	22.4%

다) 의견 :

- 집행부는 도로 열선 사용량과 도로조명시설 운영현황 등을 감안한 전기요금 부족금(3억5천만원)을 충당하고자 추경안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전기사용량을 요금으로 환산하여 계상한 내역인 바,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라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6)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p.327)

가) 사업내용 : 가로등 설치 민원처리 및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된 가로등을 교체하고 신속한 부점등을 정비하는 등의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2,205,393	2,014,043	191,350	9.5%
자체재원	2,205,393	2,014,043	191,350	9.5%

다) 의견 :

- 집행부는 가로등 시설물 유리관리를 위해 기정예산 20억1천4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야간 통행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증가 등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 예산 1억9천만원을 증편성하여 추경안으로 제출하였음.
- 가로등 시설은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시환경을 향유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추경예산안으로 제출된 바, 그 목적적합성 및 시급성 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7)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p.329)

가) 사업내용 : 이면도로상 LED 보안등 신설 및 고장 발생 보안등 보수·교체 등을 담당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2,371,540	2,177,740	193,800	8.9%
자체재원	2,371,540	2,177,740	193,800	8.9%

다) 의 견 :

- 집행부는 안전한 야간 밤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 비로 기정예산 21억7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음.
- 집행부는 기정예산사업 외에도 전용주 보안등 신설 50개소, 한전주 개량 128개소, 전용주교체 10개소에 대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1억9천만원을 증편성하여 추경안을 제출하였음.
- 야간 통행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안등의 확보는 주민의 민원 해결과 연결되는 사항으로서 추경예산안으로서 목적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임.

8) 도산대로 1길 주변의 3개소 도로정비공사(신규)(p.331)

가) 사업내용 : 도로포장상태가 불량한 이면도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911,934	0	911,934	순증
자체재원	911,934	0	911,934	순증

다) 의 견 :

- 집행부는 아래 표와 같은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내려진 바, 추경예산안으로서 시급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표> 사업위치

- ① 도산대로1길 6~도산대로1길 20(신사동) 아스콘 포장 27a
- ② 압구정로29길 68~압구정로33길 70(압구정동) 아스콘 포장 40a
- ③ 도산대로61길 10~도산대로449(청담동) 아스콘 포장 13a
- ④ 테헤란로134~테헤란로20길 25(역삼1동) 아스콘 포장 10a

9) 언주로 837~803 주변 보도정비공사(신규)(p.334)

- 가) 사업내용 : 노후되거나 침하된 간선보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임.
- 나)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450,000	0	450,000	순증
자체재원	450,000	0	450,000	순증

다) 의견 :

- 집행부는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언주로 837~803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보도블록을 새로이 포장하고 경계석 등을 설치하는 등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내려진바, 추경예산안으로서 시급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 **치수과**

1) 빗물받이관리 특별전담반 확대 시행 운영(신규)(p.339)

- 가) 사업내용 :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빗물받이관리 특별전담반 운영 유지를 위한 사업임.
-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90,002	-	90,002	순증
자체재원	90,002	-	90,002	순증

다) 의견 :

- 집행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집중폭우 등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전담반을 구성하여 사전 예방활동 및 침수 취약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9천만원을 편성한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2) 하수시설물 보수(p.341)

가) 사업내용 : 파손된 하수시설물을 보수하고 노후 불량 하수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3,400,000	2,200,000	1,200,000	54.5%
자체재원	3,400,000	2,200,000	1,200,000	54.5%

다) 의견 :

- 최근 예상하기 어려운 집중폭우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으로서 그 편성요건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3) 하수도 준설(p.343)

가) 사업내용 : 침수취약지역 및 배수 불량지역 하수관로 내 퇴적토를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세정(물청소) 작업 등을 통해 하수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3,313,040	2,300,000	1,013,040	44.1%
자체재원	3,313,040	2,300,000	1,013,040	44.1%

다) 의견 :

-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 등으로 하수관로 토사 및 오물 등의 유입이 우려되며 오수관로의 역류 방지와 악취 저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은 추경예산안으로서 목적 적합성 및 시급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4)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p.345)

가) 사업내용 : 관내 도로상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을 위한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1,165,000	665,000	500,000	75.2%
자체재원	1,165,000	665,000	500,000	75.2%

다) 의견 :

-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 등으로 빗물받이 내 토사 및 오물 등의 유입이 우려되는 실정인 바, 태풍과 가을장마 대비를 위한 빗물받이 추가 준설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예산 5억원을 증편성하여 추경안으로 제출한 사항임.
- 집행부는 추경안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빗물받이 80개소를 신설하고 빗물받이 및 연결관 280개소를 개량할 계획에 있는 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할 경우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 편성된 재난대비 성격의 추경예산안이라고 보이는바, 목적 적합성 및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5) 빗물받이 준설(p.347)

가) 사업내용 : 빗물받이 또는 연결관 내 퇴적토 및 오물 제거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비교증감 (C)	증감률 (D=C/B)
계	1,155,915	655,915	500,000	76.2%
자체재원	1,155,915	655,915	500,000	76.2%

다) 의 견 :

- 빗물받이내 퇴적토 및 오물이 여름철 집중 호우시 수해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바, 이를 대비한 추경예산안으로서 목적 적합성 및 시급성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6) 언주로 103길 27주변의 6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신규)(p.349)

가) 사업내용 : 언주로 103길 27일대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1,090,000	-	1,090,000	순증
자체재원	1,090,000	-	1,090,000	순증

다) 의 견 :

- 언주로 103길 27일대 하수관로가 매설된지 30년이 경과한 바, 이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재해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안인 바,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7) 하천시설물 보수(p.351)

가) 사업내용 : 관내 하천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1,900,000	1,400,000	500,000	35.7%
자체재원	1,900,000	1,400,000	500,000	35.7%

다) 의견 :

- 관내 소단길 탄성포장 및 웬스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민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임.

마. 미래 전략 기획 단

❖ 혁신 전략 과

1) 강남 ICT리빙랩 운영(감편성)(p.355)

가) 사업내용 : 민간시설을 임차하여 강남ICT리빙랩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0	195,131	△195,131	△100%
자체재원	0	195,131	△195,131	△100%

다) 의견 :

- 강남구 자곡로 7길4에 소재한 아세아센터 2층은 민간소유건물인 바, 집행부는 이를 임차(전세보증금 20억)하여 강남 ICT리빙랩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 강남 ICT리빙랩 운영계획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운영계획

- ① 추진근거: ICT·로봇 벤처리빙랩 구축사업 협약서
(강남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서울디지털재단)
- ② 추진계획
- 로봇 관련 사업체 입주 선정 및 관리

- 로봇인공지능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협력 연구 지원
- 창업기업 및 연구자 대상 제품화를 위한 로봇 융합 벤처 리빙랩 구축
- AI·로봇 융합 창업기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네트워킹 지원 강화

- 2024년 강남 ICT리빙랩 운영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는 건물소유주의 임대계약 재연장 거부 의사로 인해, 해당 건물내 설치한 강남ICT 내부시설물을 철거하고 이전할 계획에 있었으나, 건물소유자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임대계약 연장을 밝힘에 따라 같은 건물에 강남 ICT리빙랩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음.
- 금번 감편성된 예산액(△195백만원)은 현재 건물을 건물소유주에게 명도할 경우 부담하게 될 철거비용인 바, 해당 비용의 불용이 확정됨에 따라 추경안에 전액 감편성되어 제출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2) 개포4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p.357)

가) 사업내용 : 개포4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관련 진흥지구의 도시관리 계획 및 용도지구 결정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1,785,310	1,645,310	140,000	8.5%
자체재원	1,785,310	1,645,310	140,000	8.5%

다) 의 견 :

- 개포4동 일원을 ICT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진흥계획(안) 수립 → 지구지정 입안 → 주민열람 → 구의회 의견청취 → 진흥계획 승인 → 진흥지구 지정 → 지구단위계획 순으로 진행되어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하는 바,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인 1억

4천만원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안에 편성하여 제출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3)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산업 정책연구 용역(신규)(p.360)

가) 사업내용 :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와 발맞춰 도심항공교통 기반 산업 정책연구 용역을 통하여 미래 교통의 변화를 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20,000	-	20,000	순증
자체재원	20,000	-	20,000	순증

다) 의견 :

- 집행부는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산업 정책연구 용역을 통하여 ① 국내외 도심항공교통 산업 제반환경 조사 분석 ② 강남구 도심항공교통 연관 제반환경 분석 ③ 강남구 도심항공교통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분석을 실시할 계획에 있음.
- 집행부는 필요경비로 2천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도심항공교통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업체와 민관협력방식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사료됨.
- 도심 미래 교통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특별회계

❖ 복지정책과

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p.369)

가) 사업내용 : 중앙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정책사업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지역난방공사 남부지사)지원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14,000	0	14,000	순증
국고보조금	14,000	0	14,000	순증

다) 의견 :

- 중앙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국비로 편성되는 바,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에 의거하여 1천4백만원이 대청종합사회복지관(양재대로55길 10)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편성된 것인 바, 관련 법령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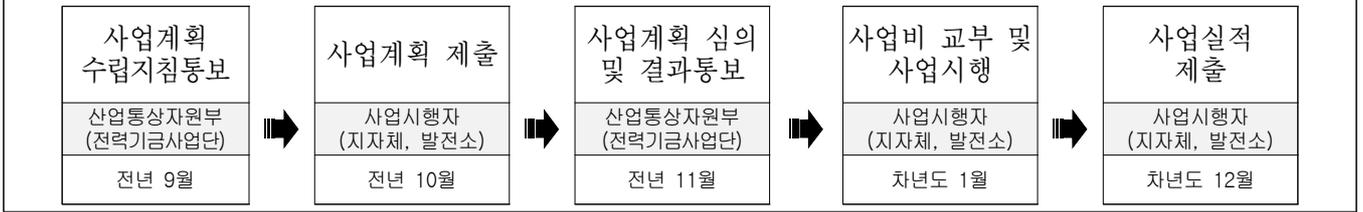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

- 목적 : 전력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개발 촉진 및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 근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89.6.16 제정)
- 재원 :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
- 대상 : 용량 2MW 초과하는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지역

발전소명	사업대상 지역 (행정동)
지역난방 서울남부지사	일원동, 개포동등 관내 18개동 (신사동, 압구정동, 논현1동, 논현2동 제외)
위례 열병합 발전소	수서동, 세곡동

- 대상사업 : 기본지원사업(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 추진절차



❖ 건축과

1)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p.373)

가) 사업내용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통합 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추가로 예탁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2,673,573	1,569,053	1,104,520	70.4%
자체재원	2,673,573	1,569,053	1,104,520	70.4%

다) 의견 :

○ 2023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1,104,520천원)이 발생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자 추경안에 편성된 사항인 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통합계정에의 예탁)에 근거한 추경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임.

❖ 환경과

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p.377)

가) 사업내용 : 위례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8,000	0	8,000	순증
국고보조금	8,000	0	8,000	순증

다) 의견 :

- 중앙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국비로 편성되는 바, 위례열병합발전소 반경 5km이내 위치한 수서동과 세곡동에 설치된 경로당에 대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8백만원을 추경안으로 편성·제출한 바,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임.

❖ 교통 행정 과

1) 공영(노상·노외) 주차장 관리 운영(p.381)

가) 사업내용 : 관내 이면도로에 위치한 공영 노상·노외 주차장 관리를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관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15,045,570	14,435,173	610,397	4.2%
자체재원	15,045,570	14,435,173	610,397	4.2%

다) 의견 :

- 관내 이면도로에 설치된 공영노상주차장 24개소와 공영노외주차장 31개소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관리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위탁관리비를 편성하였으며 이외에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축된 주차전용 건축물(논현 1호 주차장 등)에 대한 소송 및 건물명도 강제집행비용과 강남치매안심센터 공영주차장 보수보강공사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된 추경안으로서 사업의 계

속성 및 담보력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임.

2) 도산공원 복합시설 지하주차장 건설 설계 용역(p.384)

가) 사업내용 : 관내 도산공원의 복합시설(도서관,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변경용역 실시 결과 증가된 공사비에 따른 설계용역비 증가분을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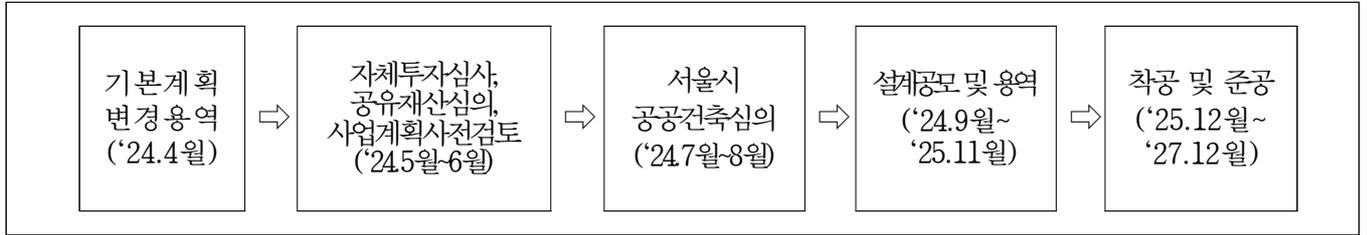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34,742	0	34,742	순증
자체재원	34,742	0	34,742	순증

다) 의견 :

○ 관내 위치한 도산공원내 복합시설 건립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바, 같은 시설 내 아래와 같은 지하공영주차장을 추가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역사회의 공영주차장 건립 민원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표> 사업개요

①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② 총사업비: 34,742천원
③ 사업위치: 강남구 도산대로45길 20 도산공원 내
④ 사업규모: 연면적 4,298.80㎡, 지하2층~지하4층, (공영)주차장 95면
⑤ 사업내용: 도산공원 복합시설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⑥ 지원형태: 직접수행
⑦ 지원조건: 구비 100%
⑧ 추진근거
- 주차장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세출)
⑨ 추진일정



3)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p.386)

가) 사업내용 :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추가로 예탁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13,883,487	3,900,000	9,983,487	256.0%
자체재원	13,883,487	3,900,000	9,983,487	256.0%

다) 의견 :

- 2023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21,701,314천원)이 발생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자 추경안에 편성된 사항인 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통합계정에의 예탁)에 근거한 추경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임.

❖ 주 차 관 리 과

1) 견인 차량보관소 위탁운영(p.391)

가) 사업내용 : 견인업체에서 대행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를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및 포상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임.

나)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721,740	674,462	47,278	7.0%
자체재원	721,740	674,462	47,278	7.0%

다) 의 견 :

-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를 시행한 후에도 불법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견인업무를 견인업체가 아닌 강남구도시관리공단으로 변경하여 위탁을 맡기기 위해 필요한 민간위탁경비와 견인단속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상금 제도 운영을 위한 경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안으로 편성·제출된 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보행 불편 및 충돌사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 변경을 반영한 추경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 검토의견 】

【청사기금】

- 내부유보금 45억 7,795만 5천원 수입 증가 사항을 반영하고 2청사 조성으로 인한 지출계획을 변경(임차보증금 350억)하려는 것으로 총무과 일반회계 추정안과 연계하여 검토 필요함. 임차보증금 회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임대차 계약 내용이 강남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없도록 계약 세부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향사랑기금】

- 2024년 기금조성에 따른 2023년 기금 수입금(157,547천원) 반영 및 타 회계 전입금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 2023년 기금 결산 결과 1,725건, 157,547천원의 기부금이 모금되어 기편성한 3천만원의 전입금을 제외한 결산 초과분 127,547천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고, 24년 기부금 수입 추산액을 170,000천원 증액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2023년 월별 기부 현황(아래 표 참고)을 보면 12월에 기부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당초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당시 수입을 추산함에 있어 이를 반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향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답례품 발굴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2023년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운용 현황>

□ 월별 기부 현황

월별	건수(비중)		금액(비중)	
계	1,725건	(100%)	157,546,800원	(100%)
1월	34건	(2%)	1,379,900원	(0.9%)
2월	18건	(1%)	331,600원	(0.2%)
3월	30건	(1.7%)	427,300원	(0.3%)
4월	17건	(1%)	248,300원	(0.2%)
5월	61건	(3.5%)	4,346,300원	(2.8%)
6월	24건	(1.4%)	1,893,200원	(1.2%)
7월	16건	(0.9%)	707,300원	(0.4%)
8월	32건	(1.9%)	3,101,000원	(2%)
9월	60건	(3.5%)	5,161,200원	(3.3%)
10월	38건	(2.2%)	4,454,200원	(2.8%)
11월	129건	(7.5%)	15,685,900원	(10%)
12월	1,266건	(73.4%)	119,810,600원	(76%)

□ 답례품 제공 현황

순위	품목명	제공건수(건)	제공금액(천원)
1	강남사랑 상품권	1,266	38,680
2	강남인강 수강권	7	210
3	강남심포니 정기연주회 관람권	1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통합계정] 23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일반회계 326억, 주차장특별회계 99억 8천, 건축안전특별회계 11억) 및 이자수입 반영

[재정안정화계정] 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33억원 반영

○ 일반(특별)회계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예탁금 수입 및 예수금 추가 이자상환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현재까지 재원이 필요한 타 회계·기금에 예탁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음.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추경안에 “지역경제과-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전출금” 100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를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의 경우 수입액보다 지출액 규모가 더 큰 상황인데 타회계 전입을 통해 융자 지원 규모를 100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정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관련하여 융자 및 융자금 회수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의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결산서 349쪽 참조), 2022년도말조성액은 45억 6,982만 8,527원, 2023년도말조성액은 58억, 4,412억 4,359원이었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편성 당시 기금운용계획상 2023년도말조성액을 33억 4,453만 4천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금번 결산 결과에 따라 연도말 조성액을 변경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당초 2023년도말조성액을 33억 4,453만 4천원으로 기재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 및 결산상 금액과 25억원 가량 차이가 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청사기금】

가. 청사기금의 목적은

- 강남구의 청사 조성 등을 통한 양질의 선진 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

나. 주요 내용으로

- 내부유보금 48억 수입 증가 및 2청사 이전으로 인한 지출계획 변경 (임대보증금 350억)에 따른 반영 필요함

다. 검토의견

(단위 : 천원)

수입			
내역	변경前	변경後	비교증감
수입 합계	250,706,558	255,284,513	4,577,955
세외수입	9,389,064	9,389,064	0
공공예금 이자수입	9,389,064	9,389,064	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41,317,494	245,895,449	4,577,955
예치금 회수	241,317,494	241,317,494	0
기타회계전입금	0	4,577,955	4,577,955

지출			
내역	변경前	변경後	비교증감
지출 합계	250,706,558	255,284,513	4,577,955
일반운영비	3,900	35,003,900	35,000,000
사무관리비	3,900	35,003,900	35,000,000
시설비및부대비	438,460	438,460	0
시설비	438,460	438,460	0
예치금	250,264,198	219,842,153	△30,422,045
일반예치금	250,264,198	219,842,153	△30,422,045

- 일반회계 전입금 4,557,955천원을 내부거래로 편성(수입)하고 「강남구 2청사」 임차보증금 350억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지출)한 것임.

수입·지출 변동으로 인한 일반예치금 30,422,045천원은 감편성(지출)한 것임. (350억원 - 4,557,955천원 = 30,422,045천원)

- 2024년도 말 조성액(일반예치금) 변경

(단위 : 천원)

2024년도 말 조성액 (변경 前)	2024년도 말 조성액 (변경 後)
250,264,198	219,842,153

【고향사랑기금】

가. 고향사랑기금의 목적은

-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라 강남구에 모금·접수된 고향사랑 기부금의 관리·운용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으로

- 2024년 기금조성에 따른 2023년 기금 수입금(157,547천원) 반영 및 타 회계 전입금 등 변경 필요

다. 검토의견

□ 변경사유

- 2024년 강남구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당시(심의일 '23. 10. 12.) 2023년 강남구 고향사랑 기부금은 18,946천원으로 12월말까지 기부 예상액을 30,000천원으로 추산하였으나
- 2023년 기금 결산 결과, 예측과는 달리 157,547천원의 기부금이 모금된 바, 2024년 고향사랑 기금의 수입금액을 변경하려는 것임.

○ 변경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24년도말 조성액 (e)=(d)+a	비 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변경 전	61,212	0	61,212	61,212	· 23년 전입금 : 30,000 · 24년 기부 추산액 : 30,000 · 이자액 : 1,212 *공공예금이자 2.02%
변경 후	358,759	0	358,759	358,759	· 23년 전입금 : 157,547 · 24년 기부 추산액 : 200,000

* 2024년 기부 추산액은 2023년 대비 27% 상향하여 산정

□ 강남구 고향사랑 기부 금액별 현황

(단위 : 건, 천원)

총 계		10만원 미만		10만원		10만원 ~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0만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25	157,547	238	2,647	1,483	148,300	2	600	1	1,000	1	5,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목적은

-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함

나. 주요 내용으로

- [통합계정] 23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일반회계 326억, 주차장특별회계 99억 8천, 건축안전특별회계 11억) 및 이자수입 반영하였고,
- [재정안정화계정] 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33억원 반영

다.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1) 제4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 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5.6.>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조 및 제6조에 따라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에 각각 443억, 33억원을 기금 재원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 통합계정: 1,245억원 → 1,688억원

- 예수금*(주차장특별회계 99억 8천, 건축안전특별회계 11억, 일반회계 326억), 이자 수입 및 이자상환액 추가분 반영

* 추경사업예산 편성 후 남은 순세계잉여금(2023년) 잔액

○ 재정안정화계정: 44억원 → 77억원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33억원²⁾ 반영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목적은

○ 강남구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으로

○ 관내 중소기업 저리 융자지원 사업 확대 실시로 지출계획 변경에 따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참고> 재정안정화계정

■ 조성재원 :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의 110% 초과 시, 그 초과분의 20% 이상

■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

-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270,778백만원)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254,601백만원)를 초과하여 그 초과분(16,177백만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33억원 적립 예정**

- 2023회계연도 : 적립액 없음

■ 지방세 : 2022~2023회계연도 적립액 없음

른 융자성사업비 100억원 추가 편성함

다. 검토의견

변경 사유: 고금리 및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저리의 융자지원을 확대하여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임.

변경 내역

○ 2024년 기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도 말 조성액 [㉠]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 말 조성액 [㉡] = [㉠] + [㉢]	비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변경 전	14,563,056	20,822,727	25,357,200	△4,534,473	10,028,583	
변경 후	14,563,056	30,822,727	35,357,200	△4,534,473	10,028,583	

○ 세부변경내역

[단위: 천원]

구분	항(세입), 세부사업(지출)	통계목	예산현액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수입 계획	합 계		35,385,783	45,385,783	10,000,000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216-01)	304,200	304,200	-
	이자수입	융자금회수이자수입(216-02)	8,281	8,281	-
	융자금원금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713-01)	20,510,246	20,510,246	-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721-03)	0	10,000,000	10,000,000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714-01)	14,563,056	14,563,056	-
지출 계획	합 계		35,385,783	45,385,783	10,000,000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일반운영비(201-01)	2,080	2,080	-
		이차보전금(307-08)	5,125,000	5,125,000	-
		민간융자금(501-01)	20,000,000	30,000,000	10,000,000
	희망실현 창구지원	민간위탁금(307-05)	30,000	30,000	-
		이차보전금(307-08)	120	120	-
		민간융자금(501-01)	200,000	200,000	-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예치금(602-01)	10,028,583	10,028,583	--

〈종합 의견〉

-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청사기금은 2청사 임대보증금 350억원을 반영하고 고향사랑기금은 계획보다 많은 답례품 지급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운영하려고 변경하는 것이고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융자지원을 확대하려고 변경하는 것으로 용자규모 및 지원대상이 적정한지, 시의성이 있는지 등 다각적으로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복 지 도 시 위 원 회 소 관

가. 기금조성금액 수정

-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은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순환기능을 촉진에 두고 있음.
- 집행부는 2022년 11월 제308회 정례회에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바, 당시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을 33억4천만원으로 보고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은 바 있음.

〈표〉 2023년말 기금 조성액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 말 조성액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 말 조성액 $d = a + b - c$	증 감 $e = d - a$
		수입 [㉡]	지출 [㉢]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4,589,518	713,366	1,958,350	3,344,534	△1,244,984

- 집행부는 2023년 11월 제315회 정례회에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당시에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의 2023년도말 조

성액을 33억4천만으로 보고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았음.

<표> 2024년말 기금조성액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3년도 말 조성액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3,344,534	860,654	1,833,180	2,372,008	△972,526

- 그런데 집행부는 금번 추경안을 통해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의 2023년도말 조성액이 2023년 결산 과정에서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재활용품판매대금의 2023년말 조성액을 33억4천만원에서 58억4천만원으로 변경하여 제출하였음.

<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단위:천원)

구분	'23년도말 조성액 ㉠	'24년도 조성계획			'24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	3,344,534	860,654	1,833,180	△972,526	2,372,008	-
변경	5,844,124	860,654	1,833,180	△972,526	4,871,598	-

- 검토하건데 집행부가 기금운영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서 집행부 자체 내부 검토 뿐만 아니라 ‘강남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바, 지난 2년 동안 잘못된 회계자료를 근거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왔다고 할 것임.
- 집행부는 단순 오타로 간주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중대한 회계상 과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집행부는 2023년도말 조성액이 잘못 추산한 것인지, 아니면 인쇄과정에서 단순

착오인지 등을 밝히고, 담당부서의 과실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무관 - 팀장 - 과장 - 국장」에 이르는 실무상 계선조직과 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지난 2년간 회계의 오류를 발각하기 못한 구체적 사유 등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집행부의 회계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킨 금번 사례에 관한 철저한 반성과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2023년말 조성액을 수정처리해야 하므로 자금수지총괄표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집행부는 제출하였음.

〈표〉 자금수지총괄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당초	변경	항 목	당초	변경
합 계	4,205,188	6,704,778	합 계	4,205,188	6,704,778
예치금회수	3,344,534	5,844,124	비용자성 사업비	1,833,180	1,833,180
이자수입	85,945	85,945	예치금	2,372,008	4,871,598
기타수입	774,709	774,709	-	-	-

나. 통계목 변경

○ 투명페트병 파쇄기 시범설치를 위한 파쇄기(1대분) 구입을 자산취득비 계상을 위해 일반운영비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3억4천9백만원에서 1천7백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항목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천7백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표〉 변경내역

(단위: 천원)

정책	단위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액
		세부	편성목	통계목	변경전	변경후	
청소 관리	재활용품 판매 대금관리추진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재활용 활성화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349,250	332,250	△17,000
			자산취득비 (405)	자산및물품 취득비 (01)	6,600	23,600	17,000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별첨

나. 수정내역: 별첨

다. 수정동의안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6. 21. 이성수 위원 외 1인

7. 심사 결과

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나.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생략”

9. 기 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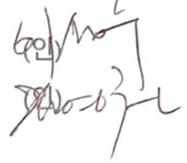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관련 의안 번호	373
----------------	-----

발의연월일 : 2024년 6월 21일

발 의 자 : 이 성 수 위 원

찬 성 자 : 김 영 권 위 원



I. 수정이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4년 5월 3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의 총 규모는 1,204억 1,849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 실효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등 5개 사업에서 16억 6,567만 1천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여 의원발의 사업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공익활동 지원’ 등 10개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16억 6,567만 1천원을 증액 편성였습니다.

II. 수정내용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총규모는 1,204억 1,849만원임. 사업 실효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등 5개 사업에서 16억 6,567만 1천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여 의원발의 사업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공익활동 지원’ 등 10개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16억 6,56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함.

첨부 세부 수정내역서 1부.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서(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결위 수정내역			수정내역			비고 (페이지)
		필요구안	예결위안	증(△)감	구분	수용여부	합	
전체규모	일반회계	120,418,486	120,418,486	0			합 1,665,671	
세입	일반회계	108,291,049	108,291,049	0				
세출	일반회계	108,291,049	108,291,049	0	합 1,665,671	수용여부	합 1,665,671	
총무과	[강남구 2청사] 조성	2,118,981	2,118,981		조전부 승인			사-13
기획예산과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진출 및 예탁	35,918,662	35,918,662		통계학 변경			사-37
복지정책과	보조금 반환(국비)	1,408,342	341,161	△1,067,181	일부삭감			
복지정책과	보조금 반환(시비)	1,042,941	509,351	△533,590	일부삭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50,000	0	△50,000	진액삭감			사-195
문화도시과	개청50주년 <강남의 시간을 걷다> 발간	95,000	91,000	△4,000	일부삭감			사-70
생활체육과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	21,800	10,900	△10,900	일부삭감			사-105
주민자치과	비영리민간단체 등 공익활동 지원	51,981	78,981	27,000	의원발의			사-27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0	303,000	303,000	의원발의			
생활체육과	2024 스포츠클리어링 월드컵대회 지원	0	100,000	100,000	의원발의			
관광진흥과	국기원 월드 관광특구 지정 연구 용역	0	49,280	49,280	의원발의			
공원녹지과	역삼문화공원 내 국기원 주변 환경개선 사업	0	300,000	300,000	의원발의			
공원녹지과	대청오출길 정비사업	0	100,000	100,000	의원발의			
도로관리과	논현동 206 - 193-18 친환경 스마트 열선 설치	0	165,000	165,000	의원발의			
치수과	양재천 보행환경개선 공사	0	100,000	100,000	의원발의			
치수과	대치유수지 피크플로장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0	60,000	60,000	의원발의			
혁신전략과	양재역 이용편의 증진 기반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0	70,000	70,000	의원발의			
기획예산과	내부유보금	0	391,391	391,391	의원발의			
세입	특별회계	12,127,437	12,127,437	0	합 0		합 0	
세출	특별회계	12,127,437	12,127,437	0	합 0		합 0	

2024. 6.

확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 박 다 미 (인)

2024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안 수정내역서 (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 천원)

부서명	기금명	사업명	예결위 수정내역			조 정 내 역			비고 (페이지)
			필요구안	예결위안	증(△)감	증 0	수용여부	증 0	
	전체규모	기금운용계획	554,798,133	554,798,133	0	증 0	수용여부	증 0	
	수입	기금운용계획	554,798,133	554,798,133	0	증 0	수용여부	증 0	
	지출	기금운용계획	554,798,133	554,798,133	0	증 0	수용여부	증 0	
종무과	청사기금	강남구청 신청사 건립	35,442,360	35,442,360		조건부 승인			임대인 명의로 토지 이전 등기와 건물 보존 등기 완료된 시점에서 1순위 전세권 등기나 채권 근저당 설정 등기 하는 등 계약 이전 전수된 모든 법적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집행 - 강남구청의 전세권이 1순위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는다 - 법적 분쟁에 패소한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는다 - 본인 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법률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계약을 진행한다
종무과	청사기금	예치금	219,842,153	219,842,153		조건부 승인			임대인 명의로 토지 이전 등기와 건물 보존 등기 완료된 시점에서 1순위 전세권 등기나 채권 근저당 설정 등기 하는 등 계약 이전 전수된 모든 법적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집행 - 강남구청의 전세권이 1순위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는다 - 법적 분쟁에 패소한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는다 - 본인 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법률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계약을 진행한다

2024. 6.

확인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 다 미 (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373
------	-----

제출일시 : 2024. 5. 30.
제출자 : 강남구청장

1. 제안이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합니다.

2. 주요골자

- 총규모** ----- 1,418,173,623천원
(증 120,418,486천원)
- **일반회계** ----- 1,354,360,494천원
(증 108,291,049천원)
- ▶ **세입**
- 가. 기정예산 ----- 1,246,069,445천원
나. 추경예산 ----- 108,291,049천원
- ▶ **세출**
- 가. 기정예산 ----- 1,246,069,445천원
나. 추경예산 ----- 108,291,049천원
- **특별회계** ----- 63,813,129천원
(증 12,127,437천원)
- ▶ **세입**
- 가. 기정예산 ----- 51,685,692천원
나. 추경예산 ----- 12,127,437천원
- ▶ **세출**
- 가. 기정예산 ----- 51,685,692천원
나. 추경예산 ----- 12,127,437천원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4. 따로붙임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